



자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일시: 2007년 11월 16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

● 이야기 순서 ●

사 회: 변화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이혼정책팀장/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사말: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

- | | |
|-------------|--|
| 10:10~10:20 | 들어가는 이야기, [햇이슈] 이혼을 둘러싼 말말말! / (김홍)미리 |
| 10:20~10:35 | 당나귀의 이야기, 이혼과 자녀에 대한 엄마의 생각 / 고미경 |
| 10:35~10:50 | 자녀의 이야기,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생각 / 길흥덕 |
| 10:50~11:05 | 연구자의 이야기, 이혼자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허와 실
- 이혼한부모와 자녀양육 / 김혜영 |
| 11:05~11:20 | 변호사의 이야기, 변호사가 바라본 자녀의 이야기
- 이혼가정 자녀보호와 관련하여 / 김재련 |
| 11:20~11:30 | 휴식 |
| 11:30~12:00 | 자유로운 이야기나눔 |

● 글심는 순서 ●

1. 들어가는 이야기, [찾이슈] 이혼을 둘러싼 말말말
 (김홍)미리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담당 1

2. 당나귀의 이야기, 이혼과 자녀에 대한 엄마의 생각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11

3. 자녀의 이야기,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생각
 김홍덕 / 27

4. 연구자의 이야기, 이혼자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허와 실
 - 이혼한부모와 자녀양육
 김혜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연구실장 29

5. 변호사의 이야기, 변호사가 바라본 자녀의 이야기
 - 이혼가정 자녀보호와 관련하여
 김재련 / 법무법인 베스트 변호사 59

6. [별첨1] 이혼자녀들의 고통?! 난 이렇게 생각해
 이혼자녀 통념에 대한 '이혼자녀'의 생각 67

7. [별첨2] 2003 정상규 판사의 자녀양육 권고문 79

들어가는 이야기, [찾이슈] 이혼을 둘러싼 말말말!

김홍미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가족담당

이슈1 가족관계등록법(2008년 1월 1일 시행)과 이혼 ..

●•이슈2 연예인 이혼이 남긴 것1)

●• 이슈1, 가족관계등록법(2008년 1월 1일 시행)과 이혼

1. 가족관계등록법, 그 달라지는 내용: 호적부 폐기, 5가지 증명서 발급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한다. 호적(부)은 가족관계등록(부)가 되고, 호적등본 및 호적초본은 5가지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로 나누어 발급된다. 본적은 없어지고 항시 변경 가능한 등록기준지가 만들어진다.

현 행	변 경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초본 (1가지)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5가지)
본적	등록기준지(*현행 호적으로 기록됨)
전적	등록기준지 변경
취적	가족관계 등록창설

증명서의 종류	기재 사항	
	개별 사항	공통 사항
가족관계 증명서	부모-배우자-자녀(3대)의 인적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성별· 본(本) ·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기본 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 사항	
혼인관계 증명서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 증명서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파양에 관한 사항	

1) 두 가지 주제는 당나귀2기 3차 모임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내용 중 일부는 이 안에서 논의된 내용을 밝힌다.

2. 이혼자의 호적등본 VS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아래의 서식은 대법원이 배포한 예시문을 참고하였으며, 성명/주소지 등은 임의로 작성하였다.

호적등본(예시)

본적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00-00번지				
호적 편제	[편제일] 2007년 10월 8일				
전호주와의 관계				전호적	
부	조용수	성 별 여	본 豊穰	전호적	전북 군산시 나포면 옥곡리 00번지 호주 조용수
모	박미자			입적 또는 신호적	
호주	조정희 (趙禎禧)			출생	서기 1972년 10월 20일
				주민등록 번호	721020-2*****
출생	[출생장소] 김해군 김해읍 어방동 30번지 [신고일] 1972년 10월 30일 [신고인] 부				
이혼	[이혼화해성립일] 2006년 10월 15일 화해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배우자 조용수 [이혼 및 일가창립신고일] 2006년 11월 16일 [신고인] 조정희 [친가본적]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000-00번지 호주 조구영				

위 등본은 호적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07년 5월 11일

서초구청장 (인)

가족관계증명서(예시)

등록기준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00-00번지
-------	---------------------

구분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조정희 (趙禎禧)	1972년 10월 20일	721020-2*****	여	豊穰

가족사항

구분	성명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조용수			남	全州
모	박미자			여	金海

자녀	이영희(李英熙)	2003년 05월 12일	030512-2*****	여	全州
----	----------	---------------	---------------	---	----

위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2008년 01월 01일

서초구청장 (직인)

혼 인 관 계 증 명 서 (예시)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1234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배우자	박길동 (朴吉童)	1968년 02월 02일	680202-2345678	남	密陽

구분	상세내용
혼인	[신고일] 1986년 01월 01일 [배우자] 전남식
이혼	[협의이혼신고일] 1987년 04월 04일 [배우자] 전남식
혼인	[신고일] 2008년 02월 01일 [배우자] 박길동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680202-2345678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중구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서기 년 월 일

○○시(읍·면)장 ○ ○ ○

직인

2. 변화와 한계

1) 부계중심이던 호적이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로 편제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안에 자녀와 함께 기록되었다는 점은 일면 긍정적이지만,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여전히 친생부의 호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추후 법이 시행되면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변경해서 바꿀 수 있다)

2) 친양자 입양이 가능함에 따라서 재혼가정의 경우 계부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이 마스크를 통해 많이 홍보되고 있다. 하지만,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15세 미만이고 친양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의 법적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야 한다. 이 때 친생부는 친족관계가 소멸되어 아버지로서의 권리가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자녀연령의 문제나 절차의 복잡함은 열외로 하더라도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2)

한편, 성씨가 다른 데서 오는 문제는 많은 경우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 불편함과 불이익이라고 할 때 ‘성이 달라도 한 식구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한 문제이다. 나와 엄마는 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떠올려보자. 성은 다르지만 가족이라는 게 전혀 낯설지 않는, 그 자연스러움을 떠올려 보자.

3) 가족관계등록법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다섯 가지의 증명서를 누가 어떻게 필요로 할까라는 데에 있다.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자녀의 학교에서 요구한다면? 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이 경우 원하지 않는 나의 기록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새로운 신분등록법이 개인 정보보호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가졌으나, 발급제한 및 규제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 개인을 중심으로 한 편제가 아닌 가족중심의 편제가 갖는 문제와
- 개인의 과거 경력(변동사항)이 현재의 증명서에도 고스란히 누적되어 발급되는 문제 (주민등록번호 공개/ 비공개여부 정도를 발급자가 선택할 수 있다)
- 이러한 정보 발급을 요청할 경우 규제하지 못한다는 문제까지

2) 친양자 입양 외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또 다른 방법은 가정법원에 성과 본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게 된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 변경을 신고할 수 있다. 친생부의 동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15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도 가능하다. 다만 법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애매한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실효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시행을 불과 두 달 앞둔 가족관계등록법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안고가기 때문일 터이다.

이 시점에서, 이런 물음을 떠올려보자.

- ① (각각의 증명서를) 누가 왜 필요로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다)
- ② 부모의 존재가, 자녀의 존재가, 개인의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
- ③ (혼인관계증명서에) 과거 이혼기록을 포함한 기타 나의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은 어떤 목적으로 요구될 수 있으며, 개인은 그러한 요구에 응해야 하는가?

● 이슈2, 연예인 이혼이 남긴 것

1. ‘잉꼬부부’의 이혼에 놀란 사람들

(‘잉꼬부부’로 알려졌던)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이 이어지자 언론은 이들의 이혼 소식을 발 빠르게 전했다. 거의 모든 신문이 이들의 이혼에 대해 보도했고 과도한 중계보도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하였다. 기사의 제목은 대부분 “000 파경”, “충격” 등을 포함하고 있고 10월 15일 이후 거의 매일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추측성 보도부터 주제 무관한 중계보도,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보도까지 이혼에 대한 보도가 넘치는 와중에,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지 되짚어보자.

2. 연예인 이혼을 둘러싼 이야기들 사이에서 발견한 것들

- ① 다양한 이혼 <사례>가 말 되어지다.

선우은숙 “이혼 특별한 계기는 없어요” 동아일보 2007. 10. 25

선우은숙 “좋은 관계 유지하려 이혼 결정했다”, 연합뉴스 2007. 10. 25

중년 연예인들의 이혼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매일경제 2007. 10. 26

日 연예인부부, 화기애애한 이혼 기자회견?, 마이데일리 2007. 11. 14

특히 ‘이혼의 특별한 계기가 없었고, 26년을 살다보면 느낄 수 있을 있을 것’³⁾이라는 기사 글은, 읽는 이로 하여금 이혼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중년부부의 성생활, 위기극복 방법 등 본질에서 벗어나는 갖가지 보도를 내보내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혼이 편안한 선택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서로 공감하는 선택이라는 것이기에 초점을 맞춘 말과 글이, 이어지 못한 것이 지적될 수 있겠다.

- ② 종류무관, 관점무관 이혼에 대해 많아진 말들.

이혼에 대한 말들도 많아졌다. 연애인을 포함한 공인들의 무수한 이혼사례를 나열하는 가십성 기사부터, 이혼의 원인을 다루는 기사 등 이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언론의 무분별한 기사 덧대기인 측면이 있고 가십성 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큰 문제를 안고있는데다가 이혼을 다루는 관점이 부정적이라는 많은 문제를 갖고있지만, 이혼에 대해 말할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은 사실이다.

난무한 말들 속에서 비판적 읽기와 말하기를 보탠다면 새로운 이혼 담론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올해 이혼한 스타들, YTN 2007. 10. 17.

다사다난 연예인들의 이혼역사 대 해부, 스포츠서울 2007. 11. 5.

[이혼] 대구 매년 1만쌍 ‘부부의 연’ 끊어, 매일신문 2007. 11. 10

별거부부 동상이몽, 서울신문, 2007. 11. 9

“양육비 나몰라라”, MBC 2007. 11. 6~7

대화도 스킨십도 없다...중년 30% 무늬만 부부, SBS 2007. 11. 3

대다수 이혼, 5~10년차 부부에서 발생, 내일신문 2007. 10.31

“이젠 헤어져” 중년이혼 급증, 노컷뉴스, 2007. 10. 30

여성 이혼요구, 남자의 3배, 서울경제 2007. 10. 29

3) 그는 이혼배경에 대해 “부부생활은 우리 나이의 여느 부부들과 별 다를 게 없었다”며 “26년을 살다보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자유롭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부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라며 “엄마·아빠를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나이지만 메스컴의 주목을 받다보니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07. 10. 25. 선우은숙, “이혼에 계기 없다...재결합 가능” 중

[포커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중년이혼 급증 SBS 2007. 10. 29 ... 등등

③ 이혼에 대한 말 속에선 이혼을 바라보는 왜곡된 관점이 드러난다.

[이혼] 위기를 넘긴 부부들 이야기, 매일신문 2007. 11. 10

위기의 중년부부 해법“하루 한번씩 포옹을”, SBS 2007. 11. 5

열도, 황혼이혼 급증 ‘이혼전용 대출’등장, 한국일보 2007. 11. 5

더 여유로워진 중년 생활, 부부위기를 부른다, SBS 2007. 11. 4

[시론] 이혼급증, 자녀는 무슨 죄인가, 조선일보 칼럼 2007. 11. 1



선우은숙, 이혼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TV YTN STAR 연예 | 2007.10.26 (금) 오전 9:53
이명하와 지난달 27일 협의이혼했다는 선우은숙! 두 아들들에 대해서 미안한... KBS 2TV <머느리 전성시대> 에, 선우은숙은 MBC TV <감치 치즈... YTN STAR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선우은숙과는 친구처럼 만나는 것은 물론 온 가족이...
네이버 | 관련기사 보기



선우은숙 “좋은 관계 유지되면 재결합 할 수도” TV SBS TV 연예 | 2007.10.26 (금) 오전 9:36
그 문제는 아닙니다.] 선우은숙 씨는 여전히 이명하 씨와 안부를 주고 받으며 좋은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우은숙/칼럼트 : (Q...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선우은숙 씨는 지난 9월 법적으로 협의...
네이버 | 관련기사 보기

※ 두 개의 상반된 제목은 이들의 이혼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홍피는 아직도 행복” 박철·옥소리 파경소식에 네티즌들 ‘제발 이혼만은...’ 한국경제 연예 | 2007.10.15 (월) 오후 3:53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옥소리와 박철은 그동안 연에게 내놓으라 하는 일교커플과 옥소리의 옥소리 나는 살림방으로 더 많은 유명세를 탔었다. 1996년 결혼, 외동딸을 키우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네티즌들은 딸을...
네이버 | 관련기사 보기

옥소리·박철을 향한 ‘제발 이혼만은...’4), 선우은숙·이명하를 향한 ‘재결합 소식 들리길’이라는 문구는 꽤 많은 기사를 장식했다. 이혼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아지고 한편에서는 이혼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들이 기사화되었다.

언론은 이혼부부를 향해 직접적인 비난을 쏟아붓지는 않지만 이혼을 ‘위기’로 진단하고 이혼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말 속에서 이혼에 대한 터부를 독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한다 하겠다. 다음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이혼위기의 부부를 위한 ‘7계명’을 정리한 기사인데 이 글의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자.

4) 이러한 반응은 외도 공방으로 초점을 이동함과 동시에 사그라들었다.

※ 이혼을 위기로 진단하고 처방을 제시한 기사의 문제

[예] 중년 파경급증...40-50대 17명 중 1명이 이혼자, 조선일보 2007. 10. 28

1. 이혼은 <위기>가 아니다
2. 이혼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천둥,번개가 아니다. 이혼은 오랜 고민 뒤에야 실행에 옮기는 어려운 결정!
3. 아래 7계명을 따를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오히려 더욱 멀어진다. 이혼에 대한 당사자의 고민을 너무 단순화하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단순한 발상.

이혼 위기의 40·50대 부부들을 위한 ‘7계명’

- ① **식사할 때 대화하라** = 모든 문제의 해법은 대화에 있다. 따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 식사시간을 이용하라.
- ② **가사를 분담하라** =가사와 육아는 모두 아내 몫이라는 ‘옛 생각’에서 벗어나라.
- ③ **자주 칭찬하고, 아플 땐 위로하라** = ‘고맙다’ ‘미안하다’ 는 말을 입에 달고 살라라.
- ④ **단둘이 데이트하라** =일·돈·친구 중심인 남편의 삶과 자녀 중심인 아내의 삶을 부부 중심으로 바꿔나기라.
- ⑤ **공통된 취미생활을 개발하라** =각자의 취미와 운동을 즐기되, 함께 즐길만한 것을 따로 하나 만들어라.
- 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친구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은 객관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 ⑦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 ‘이혼만은 안 하겠다’ 는 생각을 일단 출발점으로 삼고, 신중하게 생각하라.

(도움말: 강학중 한국가정경영연구소장,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김준기 정신과 의사, 김홍미리 한국여성역전화연합 이혼담당)

※ 도움말에 한국여성역전화연합(가족담당 김홍미리)이 7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잘못 기재된 것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조선일보 2007. 11. 9.일자 [바로잡습니다]에 정정보도 되었습니다.

④ <자녀와 이혼>에 대한 우려들.



선우은숙 “아이들에게 상처줄까봐 견절” 동아일보 연재 | 2007.10.25 (목) 오후 3:15
달린트 선우은숙이 공개 석상에서 이혼에 대해 첫 심경 고백을 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MBC 본관 3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우은숙은 “남편 이명하와... [화보] 26년만의 파경 선우은숙 기자회견 표정 [화보] 원조...
네이버 | 관련기사 보기



박현 “1년 일교부부-애들 딸 위해서라도 이혼 마세요” 매일경제 연재 | 2007.10.15 (월) 오후 4:11
해운 것이 없기 때문에 ‘박현쇼’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현과 목소리는 지난 96년 결혼해 며칠살 한 딸을 두고 있다. 평소 연에게 일교부부로 알려졌지만 최근 부부 사이에 문화가 심해져 결국...

이혼을 결정하면서 공인인 이들도 자녀에 대해 걱정한다. 추측컨데, 이들의 걱정과 두려움은 부모의 이혼 자체에서 오는 고통에 덧붙여 이혼과 자녀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과 편견을 자녀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을 것이다. 가족회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했다는 선우은숙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상황이 아들에게 누가 될까를 우려하지 않았던가.

‘이혼이 자녀에게 상처를 남긴다, ‘이혼의 최대 피해자는 자녀’라는 말은 일면 사실이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자녀를 피해자화 하는 담론이 오히려 자녀를 위축시키고 좌절케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일이다.

당나귀의 이야기, 이혼자녀에 대한 엄마의 생각

고미경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사무처장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한국사회의 이혼 담론을 바꾸기 위한 당사자 모임- **당나귀(당당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기 당나귀 모임 구성원들의 이야기 내용을 정리 한 것입니다.

1. 이혼 결정과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생각들

○ 내가 당당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당당하고 행복해진다.

당나귀들은 다양한 상황과 이유로 이혼을 “선택” 했다. 이혼을 선택할 때 결정과정에서의 고민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으나, ‘내가 당당하고 행복해야 아이들도 당당하고 행복해진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전남편하고는 부딪히기 싫었어요. 부딪히면 집안에서 큰소리가 나잖아요, 저는 그럴까봐 남편이 부당한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저 참곤 했는데, 어느 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그렇게 살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엇인가로 머리를 통 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되겠구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도 딸에게도 전혀 행복하지가 않구나 ”

“ 전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었는데, 어느 날 전남편이 아들을 심하게 때렸는데, 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 덤비지는 못하고, 그러나 너무나 힘들게 참아내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아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전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남편은 항상 회사일 땀에 늦게 오곤 했지요.. 주말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은 나 몰래 계속 도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의 도박을 고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보며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살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특히 이런식의 삶이 알게 모르게 우리아들에게 학습될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 당나귀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이혼과 자녀들에 왜곡된 시선들

우리사회에는 퍼져있는 이혼녀들을 보는 시선 중에는 이혼결정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시선을 받게 되는 불편함이 있다.

“ 평소에 나를 참 이해해 주시는 어머니에게 이혼을 의논하러 갔더니, ‘ 아이 생각 해서라도 그냥 살아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랬죠.. ’전 바로 그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 저 같은 경우는 참 친하다고 믿었던 친구가 아이 생각해서 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말을 들으면서 전 생각했죠.. 서로의 상황과 생각을 이해한다는 참 쉽지가 않구나”

“ 보통 사춘기 또래 아이들이 경험하듯이 내딸도 초등학교를 지나 지금 중학생이 되면서 말수도 적어지고 자기만의 세계가 필요하잖아요. 이것은 꼭 이혼을 해서라기 보다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만한데, 친정부모들은 부모가 이혼해서 성격이 변했다고 안쓰러워 하며 ‘ 애가 기운이 하나도 없다’ ‘예구, 제게 아빠가 없어서 그런다’ 외가에만 아이가 우연히 어른들끼리 나누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절대 외가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와 이모는 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해, 난 그냥 말하기 싫고 혼자있고 싶어 그런건데...’

○ 주체가 되는 아이들

당나귀들은 이혼결정과정에서의 과정을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즉, 아이들이 이혼 결정과정에서 충분히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전 우리같은 예비 당나귀들에게 꼭 말해 주고 싶어요.. 이혼결정과정에서 꼭 아이들과 하께 의논하고 결정하라고.. 어떤 이들은 아이들이 뭘 알겠냐고 그러지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어리지 않아요.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어른보다 더 객관적인 것 같아요.. 나와 아이들이 지금 행복한 것은 함께 결정했다는 느낌과 생각이 아이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 전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이하고 의논을 했지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때였는데, 그때는 아이가 그러더라고요..친구들중에 아직 이혼한 집이 많지 않으니, 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다렸는데, 2년 후에는 아이가 오히려 엄마의 이혼을 권했지요.. 이혼 후 아이는 확실히 집안에서 훨씬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 언젠가 딸에게 엄마 아빠 이혼 사유를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아파서 아빠가 이사를 가야해서 ...’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때 상황이 이혼하고 애 아빠 이사하고, 할머니 아프고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서 아이 나름대로는 그렇게 이해한 듯합니다.. 이런걸 보면 아이가 생각하는 이혼, 아이가 관찰한 이혼이나 이혼의 원인,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아이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아이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고, 또 아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울 수 있어요”

2. 이혼후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들

당나귀들은 얼마전 모임에서 ‘이혼가정자녀 어떻게 돌 볼 것인가’ 라는 책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 세미나에서는 책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혼 자녀를 대상화하고, 뭔가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매우 불편해 했다.

당나귀들에 펼쳐진 이혼 후 자녀들은 사회에- 인터넷에 떠도는 말처럼 불행하지도, 소위 말하는 비행(?)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펼쳐지는 담론들은 한쪽의 모습만 너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은 오히려 이혼을 통해 밝아지고 안정된 측면이 많다. 그러나 이혼이 사회적 훈장도 사회적 낙인도 아니듯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당나귀에서 이야기 되어진 것은 우리사회가 이제 왜곡된 담론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담담한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적어도 한쪽으로 편향된 왜곡된 담론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안정과 평화

“ 이혼 후 가장 실감한 것은 일요일의 평화입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은 무척 권위적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참 많이 위축되었지요.. 특히 온종일 아빠가 집에 있는 날에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혼 후 밝은 햇살을 받으며 아침에 여유 있게 일어나고, 이이들이랑 밥 먹고, 아이들의 웃는 소리를 들을 땐 아 정말 이게 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맞아요.”

“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혼 후 훨씬 밝고 씩씩해졌습니다. 이혼전보다 학교 성적도 많이 올랐구요..학교에서는 간부도 한답니다. 무엇보다도 어둡고 위축된 아이가 밝아졌고, 자기일은 스스로 해결하려는 힘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 모습을 보면 내가 왜 진작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혼 전에 우리 아이의 모습은 한마다로 시무룩, 힘없음 등이었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그렇다보니, 아이도 항상 힘이없었지요.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이혼을 하고 난

후 아이가 점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훌쩍 커서 자신의 생활은 자기 스스로 찾아갔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에서 아이는 스스로 학원도 끊고, 집에서 ebs 강좌 등을 통해 공부합니다. 엄마와 둘이 꾸러기는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가정 생활에서 무어라 할까 주도적으로 변해 갑니다. 자연히 아이가 활기를 찾아가고요.”

○ 아이에게도 이혼은 ‘상처’.

“ 아이 친구 학부모에게 내 사생활을 막아버리는 게 있습니다. 담임이나 교회 친한 엄마에게 내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애 아빠가 미국에 가 있다 라든가 그 런식으로요” (?)

“ 아이가 중1입니다. 전 남편하고는 재판이혼을 했지요. 아이에게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 테이크아웃 커피점에서 커피를 사고 있었는데, 아이가 학원다녀오는 길에 차안에서 그 모습을 보았나봐요.. 물론 저는 아이가 본 걸을 몰랐지요.. 아이가 갑자기 다짜고짜 전화가 와서 엄마 나 쌀떡볶기 먹어야 되니, 지금 빨리와 라고 하면 전화를 끊더라고요. 평소에 그런 말투로 말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아마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낯선 아저씨시랑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속이 상했나봐요 그때 우리아이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아이도 내가 일 때문에 남자랑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왜 쓸데없이 그렇게 친절하게 통화하냐고 그러더라고요..”

“ 저는 아이와 일상을 나누는 편인데, 아이에게 오늘 저녁은 대학남자 선배들 만나 줘 늦을 듯 하다고 하고 나왔는데, 그날 오랜만에 선배들을 만나 줘 많이 늦었지요.. 다른 날 같으면 아이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인데, 그 날은 아이가 엄마가 올 때까지 안자고 말뚱말뚱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아, 이 아이가 어쨌든 아빠에게 버림 받았다는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엄마에게 남친이 생기면 아이가 버림 받을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진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우리아이는 이혼의 과정에서 이혼 동의도 하고 만약에 이혼이 재판으로 가면 자신이 증언하겠다는 말도 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협의이혼을 했지만요.. 그러나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이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다른 환경에 놓여진 자신의 상황에 많이 힘들어했지요.. 자연히 저에게도 반항도 많이 하구요. 지금은 대학생이 되어 잘 지내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혼 후 한번쯤은 방황(?)을 겪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니 이렇게 겪은 일들을 당나귀에서 나누어 우리 당나귀들이 좀 덜 힘들었으면 합니다.”

“ 저는 고등학생 딸과 대학생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오빠가 동생에게 부당하게 하는 것을 보고 엄마로서 야단을 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신은 엄마, 아빠가 이혼을 왜 했는지 몰랐다. 이혼 후에 펼쳐진 나의 상황들은 너무 많이 힘들었다. 엄마, 아빠는 우리에게 왜 이혼에 관해 함께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나는 정말 혼동스러웠다는 ... 전 그날 아들이 ‘내 가정 환경이 이런데 공부해서 뭐하나, 난 짧고 굵게 살다가 그냥 죽을 것이다.’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도 아이들에게 이혼 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나의 힘듦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들이 이야기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저는 그날 서로 부둥켜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

“ 이혼을 하고 나서 6개월쯤 지나, 학교에서 진학 관련한 서류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을 떼 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주민등록등본에는 아이와 나밖에는 없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아이에게 주었더니, 아이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이름도 있는 주민등록등본-옛날 거라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빠는 뭐하고 우리아빠는 어디 출장가고 이런 이야기를 일상적으로 나누나 봐요.. 집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그럼 넌 그때 뭐라고 하니, 물으니, 아이 말이 난 우리아빠는 지방에서 근무해서 거의 한 달에 한번씩만 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도 딱히 왜 그랬니 이런 말을 묻지 못하겠더라고요..”

○ 내안의 편견 -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

“ 명절 때면 우리 당나귀들은 딱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상태일 때 처럼 명절 오후나 다음날 친정에 가는데, 친정에 가서보면 조카들이 자기 아버지랑 정겹게 지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우리아이를 보면 괜시리 제가슴이 짹~하기도 합니다. ”

“ 저는 사춘기를 지내는 딸과 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춘기면 아이가 반항하기도 하고 변덕을 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이가 조금만 시무룩해도 한 편으론 가슴이 덜컥 하기도 합니다. 혹여 저 아이가 내가 이혼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아빠가 없어서 그런것 아닌지,”

“ 전 아이한테 잘해야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이가 좀 힘없어 보일 때나 혹은 시간이 나면 아이에게 혹여 이혼 때문에 힘들지는 않나 하고 물어보곤 했지요.. 그러면 아내는 쿨하게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엄마 그런 말 이제 하지마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물어보고 싶어져요”

“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친구들과 수다 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춘기의 여학생들이 그렇듯이 어떤 친구는 자기 아빠 때문에 독립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어떤 친구는 동생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다는 이야기 등 .. 우리 딸은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엄마 아빠는 이혼했는데, 지금 참좋다 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아이에게 평소에는 이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선택’의 하나일 뿐이라는 등 그런 말을 했었는데, 아이가 막상 그런 말을 하니, 아이에게 제가 한말은 ‘그런 말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니’ 였습니다...”

“ 아이에게 하는 말은 엄마 아빠는 헤어졌지만, 너는 아빠하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 오히려 아이 스스로가 엄마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나귀들은 이혼후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녀'가 스스로 가지는 문제는 문제 혹은 상황에서 펼쳐지는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한 것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이혼 담론을 바꾸기 위한 '당나귀' 모임에 참여하고 누구보다 당당하고 쿨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내안에 있는 가부장성과 내안에 있는 이혼자녀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편견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게 된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아이들은 더 담담한데, 나 스스로의 편견을 벗어버리는 것 - 이것은 우리사회의 담론을 바꾸는 첫 번째 걸음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3. 당나귀가 생각하는

이혼 '자녀'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들

○ 함께 만들어가는 삶 - 관계와 신뢰의 재구축 필요

어쨌든 이혼은 아이에게나 당나귀들에게도 상처는 상처이다. 그러나 상처라는 것은 인간이 삶을 살면서 가지 않는 길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과 '선택'을 했기에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당나귀들은 아이와 함께 이런저런 모습으로 삶을 꾸려가고 있다. 당나귀들은 모임을 통해 이혼과 이혼후의 과정을 겪으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털어놓고 서로 해결책을 찾아가기도 한다. 당나귀들은 이러한 자조모임을 통해 임파워링이 되고, 조금씩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당나귀들이 일구어가는 자녀와 관계에서 경험과 우리사회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당나귀들의 이야기이다.

“ 어느 날 아이와 텔레비전을 보는데, 부부가 정답게 걸어가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나의 손을 꼭 잡아 주더라고요..”

“ 완벽한 아이, 완벽한 엄마의 신화를 깨뜨려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은 어쨌든 이혼을 했고, 아이가 자라면서 빚어질 문제는 여러 가지 것이 놓여 있을 것입

니다. 내가 이혼을 했으니, 다른 엄마보다 더열심히 살아야해, 혹은 우리아이들도 나는 이런 가정환경을 딛고 열심히 해야 해 하는 완벽함의 신화에서 벗어나 담담하고 잔잔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을 때)

아들, 사랑하는 엄마야 전화주삼

내가 보고 싶어 죽을 지경이남? 본 좌는 시간이 없음*^^* 보고 싶어도 좀 참삼삼!

“ 전 이혼 후 아이와 여행을 갔습니다. 되돌아보니, 나는 이혼 후 당나귀 등의 모임을 통해 많은 지지와 힘을 얻었지만, 사춘기의 아이는 어느 누구한테도 폭음을 터놓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전 무리해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이혼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이 주저리주저리 하는 이야기보다 아이와 저에게 많은 것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 전 아이와 개그프로그램을 꼭 봅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웃음을 보이면 저는 개그맨 흉내도 내면서 더 크게 웃고 그러합니다. 아이와 내가 만들어가는 일상을 즐겁게 꾸려갈려구요..”

○ 사회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들

이혼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모델은 없고 왜곡된 담론들만 있을 뿐이다. 이혼은 이미 사회적인 현상이며, 이혼자녀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나 프로그램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저는 이혼자녀들을위한 멘토- 멘티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사회에서 나 이혼자녀거든요.. 이런 말을 하기는 싶지 않지만, 엄마들과 나누는 이야기 외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자녀들이 서로 조언도 해주고 고

민도 나누는 멘토프로그램이라든지, 사이버상의 커뮤니티가 좀 활발해지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우리 당나귀들이 우리사회의 이혼 담론을 많이 바꾸어 줘야겠지요”

“저 생각에는 우리사회에 인프라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각종 청소년 상담실 등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현상인 이혼 자녀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는 거의 전무하고, 있다하더라도 접근권, 혹은 내용의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세미나에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에서 이혼자녀들에 대한 연구물이라든지 책은 한편으로 왜곡된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나귀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라든지, 혹은 우리 아이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 출판도 하고 해서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보면 말로는 다양성,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지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정상가족중심입니다. 이런 정책 속에 우리 당나귀들은 더 많은 소외감 이런 것을 느끼고, 어떨 때는 나는 사회의 이방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구요.. 정부에서 하는 한부모가족 지원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으려고 해본적이 있는데, 끝내 못 받았습니다. 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 정부는 나같은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전혀없구나를 오히려 실감했지요.. 저는 정부의 정책마인드도 바꾸고 우리같은 모임에서 정부 정책도 열심히 모니터링하여 실질적인 정책과 내용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 2007. 7. 26. ‘당당한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 이야기마당’에서 나는
“이혼의 좋은 점과 불편한 점”

○ 이혼한 후 불편해진 점(나쁜 점)

1. 자녀문제

- 아이가 상처받을 것에 대한 걱정
- 학교에서 각종 증명을 요구할 때 곤란하다.
- 가정조사서 등 제출 요구시 곤란하다.
- 문제아일 것이라는 선입견 (정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 속이 상함.
-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따돌림을 받을 것에 대한 우려
- 담임 선생님이 무시할 때
- 아이들이 결혼할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걱정
- 아이들이 부모가 이혼한 사실로 인하여 의기소침해 함
-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을 것이라는 편견

2. 사회의 각종 편견

- 우리 사회에서 ‘이혼녀’라는 말 자체가 주는 모멸감
- 주위사람들의 편견에서 비롯한 소문
- 이혼녀라는 이름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함
- 잘잘못을 따지는 나의 성격에 대해 ‘저러니 이혼했지..!’ 라고 말할 때
- 이혼하는 사람은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 이혼한 사실이 가십거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이혼 사실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

3. 각종 성폭력에 쉽게 노출

- 이혼 사실을 알고 난 후 남성들이 끈적한 시선을 보낼때
- 혼자 사는 사람은 쉽게 생각하고 모두 자신의 배우자감 후보로 생각하여 대할 때 자존심이 상한다.
- 피아노 출장레슨을 다니다가 ' 자신의 남편과 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미리 방패막이를 한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을 때
- 언어, 신체적인 성폭력 ' 남편도 없는데 왜 일찍가냐, 가면 뭐하냐, 발정기 때는 어떻게 하나

4. 제도적 차별

- 은행대출시 불이익.
- 신용등급이 하락되었다, 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한다, 이자가 오르고 기한 연장이 거부되었다.
- 파출소에서 보호자 데려오라고 할때
- 서류를 제출 하는 일이 생길 때 다시 한번 물어보거나 빨리 쳐다볼때
-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국가복지정책이 미흡하다.
- 노후에 대한 불안

5. 기타 -제도적인 문제와 요구사항

- 금전적으로 쪼들릴 때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세금대출이 안되고 집주인이 전세권등기를 거부할 때
- 여성가장창업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심사가 너무 어렵다.
- 대중매체, 교육, 직장에서 인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하다. (일정기간 자립할 수 있는 지원, 혹은 이에 뒤따르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6. 기타- 심리적인 문제

- 혼자서 일을 해결할 때 불안하다
- 미래에 대한 걱정
- 집안식구들이 나에게 대하여 지나치게 배려를 하고 걱정을 할 때
- 주말이나 명절에 갈곳이 없어 외롭다.

○ 이혼하고 좋은점

1. 경제적인 면

- 돈이 적게 든다.(생활비 절약, 스트레스풀이용 술값절약)
- 경제적 여유로 원하던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공부, 적금, 보험)

2. 시간적 여유, 생활의 자유

- 시골로 이사 하여 공기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다. (남편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
- 가사노동이 간소해졌다. (쓸데 없이 하던 음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밥걱정이 없어졌다/ 식사준비, 집안청소 등을 내시간에 맞추어 할 수 있다./ 옷장과 신발장이 넉넉해졌다)
- 만나고 싶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 일상생활이 자유로워졌다. (취침시간/ 식사시간 맘대로/ 독서시간 확보)
- 늦은 퇴근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졌다.
- 눈치를 보지 않는다.
-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이 좋다.

3. 자녀와의 관계

- 아이와의 사이가 더 좋아졌다(서로에게 의지하고 평등하게 지냄)

- 아이들이 밝아지고 명랑해졌다
-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사회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다.

4. 심리적 안정

- 가까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싸움을 하지않아도 된다.
- 남자의 노예가 아니어서 좋다.
-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 폭행이나 폭음이 없어져서 평화롭다
- 밤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다.(예전에는 늘 불안했다)
- 신경을 쓰지 않아 정신적 고통이 덜하다.
- 마음이 편안하다

5. 주체성/ 자아찾기

- 혼자 판단하다보니 똑똑해지는 것 같다.
- 자기 주관에서 벗어나 객관적 시각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양한 사회접촉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삶을 넓게 볼 수 있다
- 나만의 시간활용으로 에너지를 자기발전에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든 배워나가는 것이 좋다.
- ○○의 며느리, ○○의 아내가 아닌 오로지 나로서 독립적 인격체라는 느낌이 좋다 .

6. 관계에서의 자유로움

- 시댁식구들과의 스트레스가 없어졌다 .
- 시댁식구나 남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소비되던 시간과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집중하여 나를 위한 시간으로 쓸수 있게 되어 나 자신이 성숙된 것 같다.

- 친정부모에게 효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용돈, 여행, 명절에 함께 보낼 수 있음)
- 명절이 자유로워졌다.

7. 성문제

- 원치 않는 섹스에 대한 강박에서 풀려나게 되어 좋고 내 몸을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사랑하게 되었다.

8. 기타

- 못 남성으로부터 유혹의 손길을 받고 있다.
- (의외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의 혜택이 있다.
- (남편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사후대책에만 동참하지 않아도 되니 돈과 에너지가 절약되고 있다.

자녀의 이야기,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생각

길홍덕 /

- 아들, 증인으로 서다
- “이혼하세요 어머니”
- 내 상처를 보듬다.
-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 내가 보는 어머니 - 이제는 편안해진 어머니
- 내 싸늘한 기억들 - 딸기크림 케익과 바나나우유
- 나의 콤플렉스, 혹은 자격지심?
- 편견들
 - 이혼-자녀, 그 편견에 대응하는 나의 자세
 - 인터넷에 떠도는 이혼자녀에 대한 통념 7가지 <이혼자녀들의 고통>에 대한 생각은?
- 내가 생각하기에 어머니는.
- 생각을 키워주는 힘. 책

● 이혼한부모와 자녀양육⁵⁾

1. 들어가는 말

90년대 이후 한국 가족은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는 혼인율과 출산율은 감소하고 결혼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비해 이혼율은 급격히 증가해 온 현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혼 가족이 증가하고, 결혼과 가족구성의 방식이 다양해짐으로써 국제결혼가족, 조손가족, 기러기가족, 한부모 가족 등과 같은 이른바 후기근대가족의 특성인 형태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가족주의라는 사회문화적 전통에 따라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전체의 안정성을 더욱 중요시 해왔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와 개인주의의 확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 등으로 인한 젠더관계 및 가족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족전체의 복리나 안정성 못지않게 개인의 행복추구 역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제 가족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선택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김혜영, 2006). 뿐만 아니라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가족의 경제적 불안성이 증가하고, 여성취업의 확대에 따른 2인 생계부양자 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의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 등의 돌봄 노동을 둘러싼 젠더가족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 본고는 필자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2006년도 수행한 「이혼후 자녀양육실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췌, 일부 수정한 것이다(김혜영, 장혜경, 김영란, 여성가족부, 2006).

가족규범의 변화와 가족갈등요인의 증가로 인한 이혼 증가는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비용을 동반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들 가족의 복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회적 개입을 요청하기도 한다. 물론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또 다른 선택, 즉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합리적인 삶을 선택하는 대안적 방법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혼 자체를 부정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변화순, 1996). 하지만, 이혼은 이혼당사자의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의 단절이나 변화 등을 가져옴으로써 이로 인한 심리적인 부적응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이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이혼가족의 기본적 기능이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이혼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90년 이후 그 증가세가 급속히 상승하여 2003년도에는 조이혼율 3.5이며 결혼대비 이혼율은 무려 54%에 달한 바 있다. 이후 이혼율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되어 2005년 현재 조이혼율은 2.6, 결혼대비 이혼율은 40.6%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통계청, 2006). 또한 초혼연령의 증가와 함께 평균이혼 연령 또한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에서 2004년 동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준 연령대는 남녀 모두 30세~34세와 35세~39세이며, 2005년 현재 평균이혼 연령은 남성 42.1세, 여성 38.6세로 나타나는데, 이는 곧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통계청, 2005). 따라서 부모의 이혼 선택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사회적 고려와 실질적 지원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들은 비양육부모인 전배우자로부터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시장에서의 독립적인 노동자로서의 역할과 자녀양육노동의 제공자라는 이중적 부담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혼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제한적이고 진입한 경우조차 비정규직이거나 저임금 직종에 집중배치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의 어려움은 배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어려움은 남성 생계부양자와 매개되지 않은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윤홍식·김혜영·이은주, 2005). 이런 점에서 본고는 이혼으로 인한 가족변화, 특히 자녀관계와 이들의 양육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해볼 것이다.

2. 기존 연구의 검토 및 주요 쟁점

이혼 연구는 이혼을 바라보는 특정 사회의 관점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 마련이다. 이혼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1950년대는 이혼을 하나의 병리적 징후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했다면, 70년대 이후 서구에서는 불행한 결혼관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합리적인 선택으로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이혼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양육과 사회화,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같은 중요 기능이 상실되거나 손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이혼의 증가와 이들 자녀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다.

한국사회 역시 과거 이혼에 대한 논의는 이혼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으로 대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이혼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이혼증가 요인이나 이혼과정 보다는 대체로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혼은 개인의 고유한 인성과 함께 개인이 처한 다양한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혼 사유에 대한 요인분석 보다는 사회적 변화와 개인의 의식변화 등의 연관성 속에서 이혼을 이해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결과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우세하다.

특히 사별, 별거, 이혼 등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실태조사결과들은 남성 생계부양자가 매개되지 않은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지위하락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이혼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이혼 후 이혼여성의 가구소득변화는 연구자마다 다소 큰 차이를 보여주지만 대체로 적게는 6%에서 많게는 70%까지의 소득 수준의 하락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 생활의 위험도간에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경우는 이연주(2005)가 유일하며, 이혼 후의 결과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2001)에 의하면 일반가정도 자녀 교육비가 소득에 비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의 72.5%인 것을 볼 때 한부모, 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에는 교육비 부담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로 전 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배우자의 자녀양육비 지원에 대한 의존정도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경우 이혼한 부부 가운데, 실제로 자녀 양

육비를 '받기로 했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현재 양육비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11.5%만이 긍정적인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지급 불이행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변화순, 2003; 변화순·김혜영·윤홍식, 2006).

한편 90년대 중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이혼연구의 대부분은 이혼여성의 사회심리적 적응과정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모자가족의 특수한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양육의 어려움에 집중되어 있다. 이혼가족의 자녀문제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편의상 자녀를 가진 이혼남녀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이혼가족의 자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자녀를 가진 이혼 남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의 경우에는 자녀의 존재가 이혼 후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자녀로 인한 이혼 후 부정적 결과에 주목하는 것이고(Amato, 2000; Holden & Smock, 1991; Tschann et al., 1989), 다른 하나는 자녀의 존재는 이혼자들에게 이혼으로 인한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으로 기능함을 지적하는 것이 그것이다(문현숙·김득성, 2000). 즉 고통을 겪고 있는 이혼자들에게 자녀는 살아갈 이유가 되며,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해주거나(Kitson, 1982) 자신이 책임을 지고 돌봐야 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혼자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족의 일상적 패턴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다(Weiss, 1975; 한경혜, 1993a). 실제로 여성이혼 한부모에게 자녀의 존재는 중요한 자원(김태현·조희선, 1991; 김경애, 2000)이 되며, 이혼 남녀는 자녀의 존재자체만으로도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육선희·성미애,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혼연구들을 통해서는 자녀양육의 선택 과정이나 전배우자의 자녀양육 지원과 협력과정, 그것의 효과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혼과 자녀양육자 결정이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정확한 자료인 법원 기록을 이용한 연구가 가능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이혼 시 자녀양육의 선택 여부는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공식자료가 없고, 자녀양육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분석이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의 결정요인이 부모의사보다는 법원의 최종 결정에 좌우되고, 대체로 법원 결정에 따라 아버지 양육은 10%에 불과할 뿐 대부분이 어머니에 의한 자녀양육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

들은 누가 자녀양육자가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제적 양육(physical custody)을 어머니가 담당하면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부정적 영향, 아버지가 법적 친권(legal custody)을 공동으로 행사하거나 실제 양육과정에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는 비율, 또는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강철화·최은정, 2000).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비율은 대체로 80:20이며, 재판이혼 가운데 부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함께 청구한 경우는 23.8%에 불과한데(사법연감, 1998), 이는 재판이혼을 청구한 많은 수의 부부가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를 대부분 가정 내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구사회에서는 양육비지급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는데, Teachman & Poloko(1990)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 후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88%, 어머니가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경우 81.2%, 비양육 부모가 면접교섭권이 허용되는 경우가 92%로 나타나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를 둘러싼 협조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양육비의 지급을 둘러싼 이혼 부모의 관계나 지급비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최재석(1982)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비 부담 비율이 1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강철화·최은정, 2000). 국내에서는 이혼 후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어느 정도 협력하는지를 다룬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단지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지, 양육비를 받는지, 자녀문제로 남편과 의논하는지 등의 단편적인 질문에 대한 조사결과가 보고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이혼 후 자녀와 별거하는 부모의 자녀접촉빈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63%가 별거하게 된 부모와 거의 접촉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서영주·허남순, 2003). 뿐만 아니라 이혼한 부 또는 모 역시 상호간의 만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기존연구들은 대체로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의 60% 이상이 이혼 후에 전 배우자와 전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최재석, 1981; 한경혜·김영희, 1994; 장혜경·민가영, 2002; 서영주·허남순, 2003).

한편,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지급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자녀양육비의 지급은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는다는 안정감을 제공하고, 부자관계를 지속시키는 정서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Seltzer, 1991; 유희정, 2005). 특히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한부모들은 공통적으로 자녀양육에

서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예컨대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1%는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민가영, 2002). 또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여성의 약 1/3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서영주·허남순, 2002).

3. 연구 방법

이혼가족의 자녀양육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설문조사⁶⁾는 2006년 6월 26일부터 2006년 8월 4일까지 전문면접원의 개별가구 방문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현재 18세 이하의 자녀를 한명이라도 양육하고 있는 이혼한부모로서의 남성과 여성이다. 조사 설계에서는 이혼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성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자녀가운데 18세의 이하의 자녀를 한명이라도 직접 양육하는 이혼부모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할당표집의 원칙을 일차로 수정한 바 있다. 특히 이혼한 남성한부모 사례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혼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보다는 자신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이들로부터 자녀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나 정책욕구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자에서 배제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응한 남성 이혼자들은 한 집에서 적어도 한명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와 거주하는 남성이혼자로 한정하고 있다. 최종 분석대상자는 총 387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은 320명(82.7%), 남성은 67명이며, 이들의 자녀수는 1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5.2%(175명), 2명이라는 응답자가 49.1%(190명), 3명 이상이 6.7%(22명)를 차지하고 있다.

4. 이혼한부모 가족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지위

1) 가족구성 및 가구원수

이혼한부모의 가족구성은 대부분이 이혼한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본인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전체의 82.1%, 55가구에 달하며, 그

6) 본 조사는 필자가 연구책임자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연구용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조사의 수행은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담당하였다.

외에 이혼남성 본인의 부모와 본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14.9%, 10가구이다. 그 외에는 형제자매나 조카가 더 있는 경우가 각각 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한부모가족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혼한 본인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96.6%로 남성한부모가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9가구(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경우 이혼한 뒤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도움을 받는 예가 많지만 여성은 오히려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자의 가구원수는 최소 3인에서 최대 6명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절반가량(51.7%)이 가구원수가 3명이라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가구원수가 2명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그 외 3명 이상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12.9%로 매우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곧 이혼가족의 형태적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혼한부모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이혼한 뒤 자녀 2명 또는 1명과 살기 때문이다.

2) 이혼한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혼한부모의 직업지위를 살펴보면, 남성한부모는 현재 88.1% 여성한부모는 82.8%가 취업상태로 남녀 모두 취업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여성이혼한부모의 높은 취업률은 이혼 후 새롭게 부여된 가족부양자의 역할수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직종은 전체적으로 서비스 및 판매직 종사자가 54.6%로 가장 많으며, 다음은 사무종사자로 12.0%의 순을 보여준다. 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서비스 판매직 종사자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한부모는 33.9%, 여성이혼한부모는 59.2%로 여성한부모의 서비스직 종사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직에 이어 남성한부모들은 기계 및 기능종사자(28.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단순노무종사자(20.0%)로 나타났다.

이혼한부모들은 현재 매우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혼 당시 이들의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남성한부모와 여성이혼한부모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남성이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이혼 당시에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92.5%인 반면, 이혼한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여 현재는 88.1%가 직업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반면 여성이혼한부모의 경우에는 이혼 당시 50.9%만이 취업하고 있었으나 이혼 이후 취업한 비율이 증가하여 현재는 82.8%에 달한다. 결국 여성들

은 이혼 후 생계부양을 위해 거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게 되는 반면 남성들은 이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취업률이 미약하나마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이혼한부모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시일용직이 48.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상용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18.2%에 불과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상용직이 가장 많아 전체의 49.2%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임시일용직이 가장 많았으며 무급가족종사사도 0.4%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혼한부모의 성별 차이는 한국노동시장의 성별 취업구조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 총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단위: 명, %)

항목	남성	여성	전체
내 월급에서 총당	58(86.6)	24(75.0)	298(77.0)
전 배우자의 지원	0(0)	7(2.2)	7(1.8)
나의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	1(1.5)	7(2.2)	8(2.1)
은행대출금	1(1.5)	1(3)	2(5)
정부보조금	4(6.0)	48(15.0)	52(13.4)
이혼시 받은 위자료	0(0)	8(2.5)	8(2.1)
저축해 둔 돈	1(1.5)	5(1.6)	6(1.6)
재산에 따른 이익	2(3.0)	0(0)	2(5)
다른 가족이 벌어오는 돈	0(0)	1(3)	1(3)
기타	0(0)	3(9)	3(9)
계	67(100.0)	320(100.0)	387(100.0)

이혼가족의 소득구성을 살펴보기 위해 총소득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이 무엇인가를 질문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내 월급에서 총당” 한다는 응답비율이 높아 대부분이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소득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항목을 정부보조금으로 꼽은 경우는 전체의 13.4%로, 남성한부모의 6.0%, 여성한부모는 15.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지원금을 받는 가구로서 남성보다는 여성이혼한부모가 더 많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밖에 항목들을 보면 이혼 시 받은 위자료, 전배우자의 지원, 나의 가족이나 친지의 지원, 저축해둔 돈 등의 항목이 있으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주목할 점은 전배우자의 지원의 경우 남성은 전혀 없으며 여성은 2.2%에 불과하지만 지원받고 있다는 점이다. 보편적으로 남정보다 여성의 경제력이 낮기 때문에 이혼한 남성은 자녀를 양육하는 전배우자에 대해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원하지만

여성은 전남편이 아이를 양육하더라도 지원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보여준다.

이혼한부모의 현재 월평균근로소득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전체의 15.5%로 전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은 131만원~200만원 사이인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이 201만원 이상의 순이었다. 반면 여성은 절반 이상이 100만원 이하이며, 두 번째가 131만원~200만원으로 남성에 비해 소득수준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의 다른 소득을 모두 포함한 가구 총소득을 살펴보면, 현재는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의 근로소득과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가구소득이 201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131만원~200만원의 순이지만, 여성은 100만원 이하가 가장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 표 2 > 월평균 가구 총소득(단위: 명,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현재	없음	1(1.5)	2(5)	3(8)
	100만원 이하	13(19.4)	161(50.3)	174(45.0)
	101~130만원	8(11.9)	59(18.4)	67(17.3)
	131~200만원	21(31.3)	71(22.2)	92(23.8)
	201만원 이상	24(35.8)	27(8.4)	51(13.2)
계	67(100.0)	320(100.0)	387(100.0)	

5. 이혼한부모 가족의 부모자녀관계

1)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

비양육부모는 자녀에 대한 친권이나 양육권이 없으며,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자녀의 생부 또는 생모를 지칭하는 것이다. 이혼으로 부부관계는 자연스럽게 해소되지만, 이혼한부모는 여전히 자녀를 중심으로 각기 자녀양육의 의무와 책임을 갖는 부모역할을 수행해야 하게 된다. 이때 이혼 후 자녀가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에서 양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와 별거하면서 양육부모와는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부 또는 모가 비양육부모인 셈이다. 한집에 동거하며 일상을 영위하는 양육부모와 마찬가지로 비양육부모는 자녀의 정서적 유대의 토대이자 자녀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이들의 사회화 과정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혼 후 자녀가 따로 사는 부모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어느 정도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이혼한부모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지와 양육비를 지원받는지의 여부, 그리고 자녀문제로 남편과 의논하는지 등의 단편적인 질문을 통해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와 별거하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접촉빈도는 상당히 낮아 과반수이상의 이혼가족에서 비양육부모와 전혀 만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영주·허남순, 2003; 유희정, 2005).

본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나 이혼가족의 47.8%가 아무런 연락이나 교류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응답은 9.8%에 그치고 있다(<표 3> 참조).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나고 답한 이혼가족의 경우,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 빈도는 한 달 평균 1회 정도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6.8%), 다음으로는 월 2회 정도(21.1%), 주 1회(18.4%), 주 2회 이상(13.2%), 1년에 3회 이하(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 빈도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이혼가족의 수가 매우 적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혼한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단절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간혹 자녀와의 만나는 경우조차 정기적인 약속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비양육부모의 갑작스러운 방문이나 명절 등과 같은 특정의 시기에 맞추어 비양육부모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자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성장과정에 대한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어 주기적으로 자녀를 방문하고 자녀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과는 다분히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러한 자녀와의 만남은 결국 그리움 등의 감정적 요인이나 명절과 같은 가부장적 전통과 의례에 따른 혈육 찾기에 의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일 뿐 자녀양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협력의 과정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3 >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정도(단위: 명, %)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마다 만나고 있다	편지, 이메일, 전화연락만 하고 있다	전혀 연락이나 교류가 없다	계	
전체 응답자	38(9.8)	122(31.5)	42(10.9)	185(47.8)	387(100.0)	
성별	남성	5(7.5)	26(38.8)	5(7.5)	31(46.3)	67(100.0)
	여성	33(10.3)	96(30.0)	37(11.6)	154(48.1)	320(100.0)
이혼형태	협의이혼	33(10.3)	109(34.2)	40(12.5)	137(42.9)	319(100.0)
	재판이혼	5(7.4)	13(19.1)	2(2.9)	48(70.6)	68(100.0)
학력	중졸 이하	2(5.7)	6(17.1)	6(17.1)	21(60.0)	35(100.0)
	고 졸	23(8.7)	88(33.2)	29(10.9)	125(47.2)	265(100.0)
	대졸 이상	13(14.9)	28(32.2)	7(8.0)	39(44.8)	87(100.0)
소득수준	중간층	25(15.2)	61(37.0)	16(9.7)	63(38.2)	165(100.0)
	저소득층	13(5.9)	61(27.5)	26(11.7)	122(55.0)	222(100.0)

이러한 경향은 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아버지들은 어머니에 비해 '자녀와 전혀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경우에도 정기적이기 보다는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만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이혼방식이 재판이혼인 경우는 협의이혼에 비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정도가 더욱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육부모의 교육 및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나타나고 있다. 즉 양육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중간층 이상인 이혼가족의 경우에서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보다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한편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의 관계와 이들의 협력적 부모역할 수행여부, 양육부모 및 비양육부모의 재혼여부, 이혼 전 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 등이다. 특히 이혼한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의 적대적 관계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감정을 억압하게 하고,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적응유형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수행한 Wallerstein & Blakelee(1989)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한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성의 약 1/2, 남성의 1/3은 전 배우자에 대해 아직도 강하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혼 후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혼한 부부간에는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경우 양육부모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접촉을 통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양육부모를 자녀양육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

한국사회의 경우, 자녀가 있는 이혼여성의 60% 이상이 이혼 후에 전 배우자와 전혀 만나거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최재석, 1981; 한경혜·김영희1994; 장혜경·민가영, 2002; 서영주·허남순, 2003), 만나는 경우에도 대부분이 1년에 한두 번 정도이며, 만남의 주된 이유는 자녀와 관련되어 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이혼여성들의 자녀 가운데 약 63%는 별거하게 된 부모와 거의 접촉 없이 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녀가 원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55.3%), 다음으로는 '전배우자가 원하지 않아서'(26.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영주·허남순, 2003).

이런 점에서 전배우자와 양육부모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본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전배우자와 이혼 후에도 연락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1%만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난다'는 응답은 20.7%, '편지, 이메일, 전화연락만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0.1%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 전배우자와의 재결합의사는 전체 응답자의 7%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이들이 결혼관계의 해체 이후 자녀를 중심으로 함께 파트너로서 자녀양육의 문제를 상의하는 협력적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부모의 이혼을 전후로 하여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정기적으로 만나고 상호의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혈연만으로 정서적 친밀성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혼 전의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혼 전 비양육부모와 자녀가 매우 친밀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의 관계단절로 인한 자녀의 정서적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양육부모의 노력이나 자녀의 요구 또한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혼한부모에게 이혼 전 그들의 전배우자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7%가 대체로 친밀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이혼남성은 이혼 전 자녀와 전배우자인 아내가 대체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1%로 나타난데 비해 이혼여성이 응답한 이혼 전 자녀와 전배우자인 남편의 관계는 47.2%만이 '친밀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자녀와 부모의 친밀성에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격차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친밀성은 이혼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중산층 이상인 집단에서 더욱 나타나고 있다.

< 표 4 > 이혼 전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단위: 명, %)

	매우 친밀했다	대체로 친밀한 편	보통/그저 그렇다	대체로 친밀하지 않은 편	전혀 친밀하지 않음	계
응답자 전체	71(18.3)	129(33.3)	113(29.2)	50(12.9)	24(6.2)	387(100.0)
성별	남성	18(26.9)	31(46.3)	10(14.9)	7(10.4)	67(100.0)
	여성	53(16.6)	98(30.6)	103(32.2)	43(13.4)	237(100.0)
이혼형태	협의이혼	64(20.1)	106(33.2)	95(29.8)	41(12.9)	319(100.0)
	재판이혼	7(10.3)	23(33.8)	18(26.5)	9(13.2)	68(100.0)
학력	중졸 이하	6(17.1)	10(28.6)	8(22.9)	7(20.0)	35(100.0)
	고 졸	41(15.5)	94(35.5)	76(28.7)	36(13.6)	265(100.0)
	대졸 이상	24(27.6)	25(28.7)	29(33.3)	7(8.0)	87(100.0)
소득수준	중간층	32(19.4)	62(37.6)	55(33.3)	14(8.5)	165(100.0)
	저소득층	39(17.6)	67(30.2)	58(26.1)	36(16.2)	22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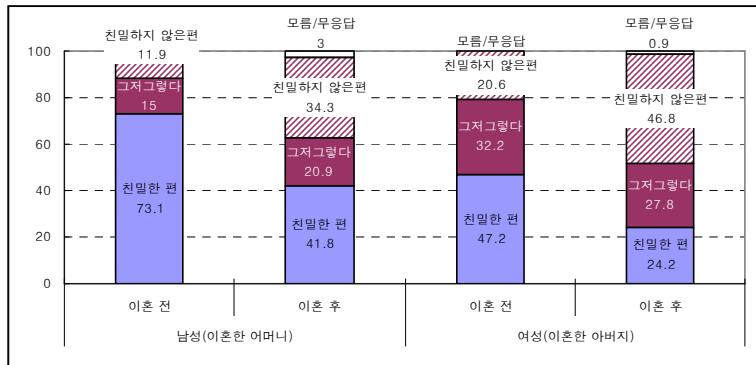
한편,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 자녀친밀성의 정도를 살펴보면, 이혼 이후 비양육부모가 어머니인 경우가 아버지인 경우에 비해 친밀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으며, 부모가 협의 이혼한 경우에서 자녀와의 친밀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혼한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중간층 이상인 집단에서 이혼 후 자녀와의 친밀성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5 > 이혼 후 현재 전 배우자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단위: 명, %)

		매우 친밀했다	대체로 친밀한 편	보통/ 그저 그렇다	대체로 친밀하지 않은 편	전혀 친밀하지 않음	무응답	계
전체 응답자		20(5.2)	86(22.2)	103(26.6)	56(14.5)	117(30.2)	5(1.3)	387(100.0)
성별	남성	8(11.9)	20(29.9)	14(20.9)	4(6.0)	19(28.4)	2(3.0)	67(100.0)
	여성	12(3.8)	66(20.6)	89(27.8)	52(16.3)	98(30.6)	3(0.9)	320(100.0)
이혼형태	협의이혼	19(6.0)	78(24.5)	90(28.2)	38(11.9)	90(28.2)	4(1.3)	319(100.0)
	재판이혼	1(1.5)	8(11.8)	13(19.1)	18(26.5)	27(39.7)	1(1.5)	68(100.0)
학력	중졸 이하	3(8.6)	5(14.3)	5(14.3)	10(28.6)	12(34.3)	0(0.0)	35(100.0)
	고 졸	9(3.4)	55(20.8)	78(29.4)	38(14.3)	80(30.2)	5(1.9)	265(100.0)
	대졸 이상	8(9.2)	26(29.9)	20(23.0)	8(9.2)	25(28.7)	0(0.0)	87(100.0)
소득수준	중간층	8(4.8)	50(30.3)	48(29.1)	23(13.9)	35(21.2)	1(0.6)	165(100.0)
	저소득층	12(5.4)	36(16.2)	55(24.8)	33(14.9)	82(36.9)	4(1.8)	222(100.0)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은 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혼 전과 후를 비교한 다음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 전과 비교하여 이혼 이후 자녀와의 친밀성의 정도가 하락하는 비율은 이혼부모의 성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이혼 전후 비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친밀도 비교 (단위: %)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친밀성 정도는 이들의 만남의 방식이나 정도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아래의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정기적으로 비양육부모와 만나고 있는 경우, 양육부모들은 자녀의 비양육부모와의 관계가 대체로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8.4%). 그러나 전혀 연락이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대체로 친밀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음에 비해(61.3%), 편지, 이메일, 전화연락만 하는 경우에는 그저 그런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표 6> 이혼 후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정도과 친밀성(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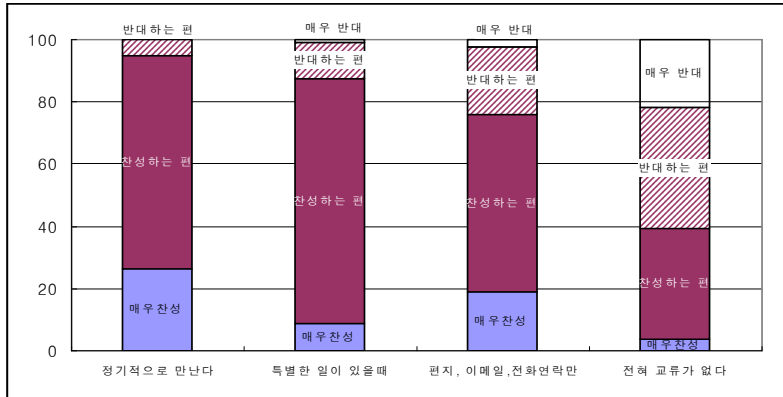
		정기적으로 만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만남	편지, 이메일, 전화연락만 하고 있음	전혀 연락이나 교류가 없음
친밀성의 정도	매우 친밀한 편	7(18.4)	7(5.7)	3(5.7)	3(1.6)
	대체로 친밀한 편	19(50.0)	48(39.3)	9(21.4)	10(22.2)
	보통/ 그저 그렇다	9(23.7)	47(38.5)	20(47.6)	27(14.6)
	대체로 친밀하지 않은편	3(7.9)	15(12.3)	9(21.4)	29(15.7)
	전혀 친밀하지 않은편	0(0.0)	5(4.1)	1(2.4)	11(60.0)
	무응답	0(0.0)	0(0.0)	0(0.0)	5(1.3)
	계	38(100)	122(100.0)	42(100.0)	185(100.0)

한편, 전배우자의 재혼여부에 대해서는 재혼한 상태라는 응답은 12.7%, 재혼할 예정이라는 응답비율이 2.6%, 재혼하지 않음이 53.0%, 소식을 모른다는 응답도 31.0%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비양육부모의 재혼여부에 따른 자녀만남 및 자녀 친밀성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확인 가능한 것은 부모의 이혼 이후 비양육부모의 소식을 전혀 모르는 경우와 비양육 부모가 이미 재혼한 경우에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와의 친밀성도 크게 약화된다는 것이다.

비양육부모와의 만남에 대한 양육부모의 허용적 태도는 자녀들의 비양육부모와의 교류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데, 아래의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비양육부모와 대면적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양육부모의 허용적 태도가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 대면적 접촉이나 전화연락 등의 교

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와의 교류에 반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양육부모태도에 따른 자녀와 비양육부모의 교류(단위: %)



2) 이혼한부모가족과 자녀양육

가. 이혼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의 어려움

이혼 후에 이혼한부모가 경험하는 자녀교육 문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학교나 유치원 등 각종 공식교육의 장에서 이혼가족의 자녀로 겪는 문제들이다. 우리 사회는 무의식적으로 부와 모, 그리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종 매체나 교과서 등 암묵적으로 가족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새로운 경향으로 아버지의 육아참여를 강조하는 경향이 사회문화적으로 확산되면서 아버지가 없는 이혼가족의 자녀에게 아버지 참여분위기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본 조사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인해 곤란을 겪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해본 결과 전체의 22.5%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0~6세는 26.2%, 7~12세는 25.8%, 13~18세는 22.2%로 거의 유사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만 19세 이상의 경우는 전체 27명 가운데 1명만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녀의 나이가 많을 경우 이러한 경험이 줄어든다는 볼 수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에서부

터 고교를 졸업하는 시기까지 공식교육기관에서 이혼 가족으로서 부모가 함께 하는 행사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아직도 이혼가족에 대한 배려가 미흡함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아래 <표 7>에서 어려움의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가족이 함께 하는 학예회, 운동회 등 행사'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9명이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족 신문 만들기, 가족그림, 아빠 사진이나 가족사진을 이용한 각종 행사' 등이었다. 그밖에 아빠가 참여하는 수업도 많이 꼽히고 있는 부담스러운 행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아빠 직업 소개나 아빠 직장 체험하기' 등에 대해서도 곤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가족에 관해 조사할 때'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자녀 양육에 대해 아버지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아빠 참여행사 혹은 전 가족이 함께 하는 행사가 늘어나고 있음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분 혹은 양부모가 없는 아동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자칫 성장기 자녀의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7> 자녀 교육 관련 어려움 내용(단위: 명, %)

내용 (Content)	명수 (Count)	비율 (%) (Percentage)
졸업식, 입학식 (Graduation, Enrollment)	5	5.9
아빠참여수업 및 행사 (Dad participation classes and events)	17	20.0
학예회 등 가족이 함께하는 행사 (School events, etc. with family participation)	29	34.1
가족신문 만들기, 가족그림, 사진이용 행사 (Family newspaper, drawings, photo events)	23	27.1
정상가족위주의 교육으로 아이가 상처받음 (Normal family-oriented education hurting child)	1	1.2
가족에 관해 조사할 때 (When surveying about family)	3	3.5
급식 배급 시 (During school meals)	3	3.5
진로상담 및 학교 상담 때 가지 못한 것 (Missed career/school counseling)	2	2.4
아빠 직업 소개, 아빠 직장체험 등 (Dad job intro, workplace experience, etc.)	2	2.4
전체 (Total)	85	100.0

나. 한부모의 역할 한계

양부모가정과는 달리 혼자서 부모노릇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혼한부모들은 공통적으로 부모역할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 본 조사대상자 역시 73.1%가 전배우

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정도에 있어서는 남성한부모가 여성한부모에 비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양육 부모의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전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응답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8> 이혼 후 한부모로서 전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는 정도(단위: 명, %)

구분	매우 많다	약간 많은 편	거의 없는 편	전혀 없다	계	
전 체	72(18.6)	211(54.5)	93(24.0)	11(2.8)	387(100.0)	
성별	남성	17(25.4)	36(53.7)	13(19.4)	1(1.5)	67(100.0)
	여성	55(17.2)	175(54.7)	80(25.0)	10(3.1)	320(100.0)
이혼형태	협의이혼	53(16.6)	183(57.4)	76(23.8)	7(2.2)	319(100.0)
	재판이혼	19(27.9)	28(41.2)	17(25.0)	4(5.9)	68(100.0)
학력	중졸 이하	13(37.1)	20(57.1)	1(2.9)	1(2.9)	35(100.0)
	고 졸	47(17.7)	141(53.2)	69(26.0)	8(3.0)	265(100.0)
	대졸 이상	12(13.8)	50(57.5)	23(26.4)	2(2.3)	87(100.0)
소득수준	중간층	21(12.7)	97(58.8)	45(27.3)	2(1.2)	165(100.0)
	저소득층	51(23.0)	114(51.4)	48(21.6)	9(4.1)	22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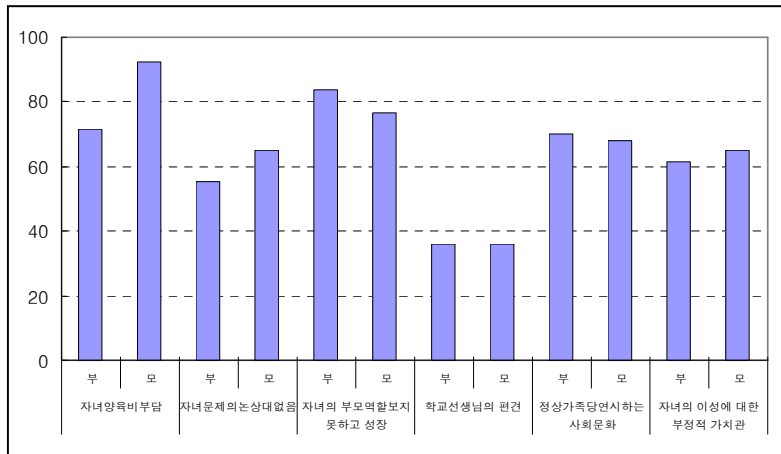
이들이 한부모로서 전배우자의 역할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구체적인 부분들은 심층면접을 통해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혼한부모들은 양부모가정의 자녀들은 양성의 성역할과 양부모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지만, 한부모만으로는 그러한 역할수행의 모델을 적절하게 제공할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성의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한부모의 애환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성 한부모의 경우에는 아들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과 신체적 성장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조인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있다면, 남성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을 섬세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딸들의 신체적 변화에 개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꼽고 있다.

<표 9> 항목별 이혼 후 자녀양육어려움의 동의정도(단위: 명, %)

	매우 그런편	그런 편	그렇지 않은 편	전혀 그렇지 않은 편	해당 없음	모름/무응답	계
자녀양육비용부담	207(53.5)	136(35.1)	37(9.6)	7(1.8)	-	-	387(100.0)
자녀문제를 의논할 상대없음	94(24.3)	151(39.0)	125(32.3)	17(4.4)	-	-	387(100.0)
자녀가 아빠(엄마) 역할을 보지 못하고 성장하는 것	125(32.3)	177(45.7)	76(19.6)	8(2.1)	-	1(0.3)	387(100.0)
자녀에 대한 학교 선생님의 편견	21(5.4)	118(30.5)	186(48.1)	53(13.7)	9(2.3)	-	387(100.0)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	66(17.1)	198(51.1)	106(27.4)	16(4.1)	-	1(0.3)	387(100.0)
자녀가 이성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는 것	56(14.5)	193(49.9)	107(27.6)	30(7.8)	-	1(0.3)	387(100.0)

다음은 한부모로서 자녀양육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사안별 동의정도를 통해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혼한부모로서 이들이 가장 강하게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는 무엇보다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며, 다음으로는 자녀가 엄마 혹은 아빠의 역할을 보지 못하고 성장한다는 것, 양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을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한 어려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이혼한 부모의 성별,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는 위의 <그림 3>과 같다. 한부모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한부모의 성별이나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지만, 여성이혼한부모들은 남성한부모보다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과 자녀문제에 대한 의논상대가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더 많이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항목별 자녀양육어려움(단위:%)



이러한 어려움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부양해야 하는 한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양육을 포기하고 싶은 욕구로 이어지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의 원동력을 얻기도 한다. 특히 혈연에 근거한 가족주의 전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자녀는 특별한 애착의 대상인 동시에 자녀부양과 자녀교육에 대한 과도한 책임성에 기인하는 부담의 원천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작용하고 있음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3) 이혼 후 자녀생활세계의 변화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의 심리적인 불안정, 자신감의 결여 등과 같은 적응상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환경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방황이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부모의 갈등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기도 하고 혼자된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여 더욱 배려적이고 성숙한 태도를 보여주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유희정, 2005).

이혼가족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혼한부모의 응답을 통해 이들의 자녀가 이혼 이후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본 조사대상자인 이혼한부모들은 자신들의 자녀가 이혼 후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10> 이혼 후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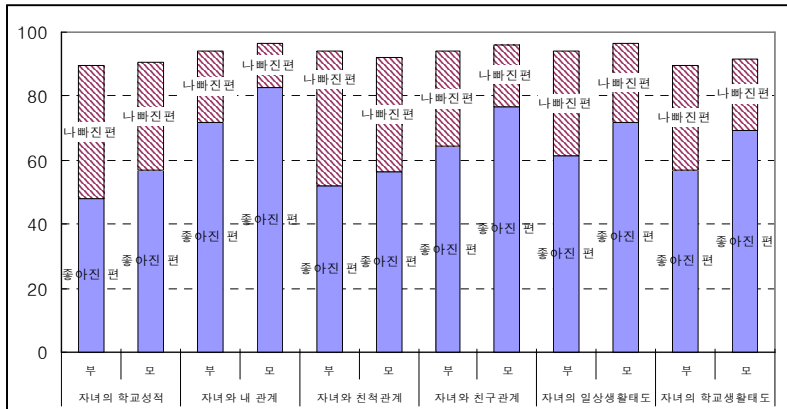
구분	매우 좋아짐	좋아진 편	나빠진 편	매우 나빠짐	변화 없다	해당 없음	모름/무응답	계
학교 성적	18(4.7)	196(50.6)	125(32.3)	11(2.8)	8(2.1)	27(7.0)	2(0.5)	387(100.0)
양육부모의 관계	45(11.6)	267(69.0)	55(14.2)	5(1.3)	8(2.1)	4(1.0)	3(0.8)	387(100.0)
친척과의 관계	19(4.9)	197(50.9)	141(36.4)	15(3.9)	7(1.8)	5(1.3)	3(0.8)	387(100.0)
친구와의 관계	28(7.2)	261(67.4)	77(19.9)	4(1.0)	7(1.8)	7(1.8)	3(0.8)	387(100.0)
일상생활의 태도	29(7.5)	241(62.3)	98(25.3)	3(0.8)	7(1.8)	7(1.8)	2(0.5)	387(100.0)
학교생활태도	30(7.8)	230(59.4)	91(23.5)	2(0.5)	7(1.8)	24(6.2)	3(0.8)	387(100.0)

특히 이혼한 뒤에 자녀와 본인들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0.6%에 달하며, 자녀의 학교친구관계와 일상태도가 좋아졌다는 응답도 70%를 상회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혼 이후 자녀의 생활세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소 나쁘게 변화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은 항목은 자녀와 친척 관계와 학교성적이다(<표 10> 참조). 학교성적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자이자 생계부양자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이혼한부모에게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다. 유달리 높은 사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한국적 현실에서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마저 쉽지 않은 이혼한부

모든 경우 자녀성적을 위한 뒷바라지와 이를 위한 비용 등의 고민은 상당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혼 후 자녀의 긍정적 변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성별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양육부모가 아버지인 경우보다 어머니인 경우에서 자녀들의 긍정적인 생활변화를 인정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이혼사유의 차이에 기인하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자녀와 친밀함의 정도가 아버지보다 어머니하고 더 깊기 때문에 이혼 후의 적응 역시 더 빠르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자녀 역시 이혼 후에 보다 긍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한편 이혼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만, 그 격차는 성별보다 크지 않았다(<그림 4> 참조).

<그림 4> 양육부모의 성별에 따른 자녀의 가족관계 및 생활태도 변화(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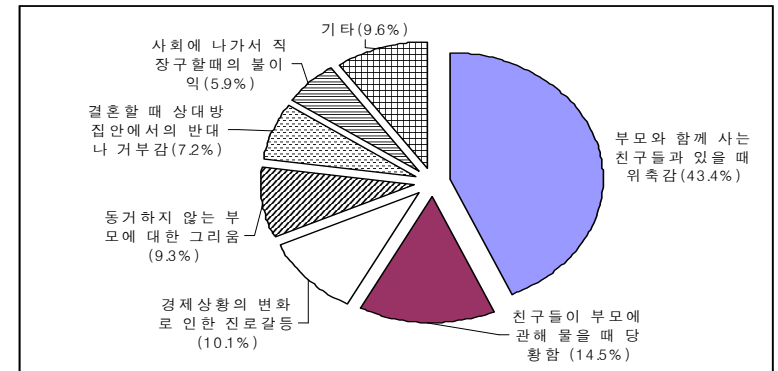


그러나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마음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들이 이혼을 선택함으로써 자녀들이 한부모가족에서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이 훗날 자녀에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걱정하게 된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부모들은 자신들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많은 응답자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사는 친구들과 있을 때 위축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친구들이 부모에 대해 물을 때 당황하는 것', '경제상황변화로 인한 진로 갈등' 순으로 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양육부모의 성별이나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5> 이혼으로 인해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6. 요약 및 논의

부부의 이혼은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 모두에게 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게 만드는 일련의 생애사적 사건으로, 이혼이후 변화된 환경에 대한 자녀의 적응은 이혼가족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혼가족의 자녀들은 대체로 부모의 이혼 후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후 양육부모와의 관계와 친구관계, 일상적 태도와 학교생활태도 등이 대체로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학교성적과 친척의 관계는 더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의 긍정적인 변화는 양육부모가 아버지인 경우보다 어머니인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혼한부모들은 이혼 후 자녀들의 긍정적 변화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다른 한편

사교육이 사회문제가 될 만큼 심각하다는 점에서 자녀의 학업성적이나 자녀들의 학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혼한부모들은 자녀들의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사실로 인해 자녀들이 양부모가정의 자녀들에게 위축되거나 양육부모가 비양육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균형잡힌 성역할이 지체되고 자녀들의 성장과정에 적절히 개입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한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자녀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고,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정책으로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 역시 경제적 지원(65.4%)이며 이는 남성보다 여성한부모집단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 실제로 이혼한부모가족에서 자녀양육비로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31~50만원 이하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5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29.2%에 달하며, 이러한 비용 가운데 이혼한부모들이 공통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항목은 바로 사교육비이다. 즉 전체 응답자의 68.7%는 자녀양육비 지출액 가운데 사교육비로 인한 지출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한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특히 이혼한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교육비 부담의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지원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일상적 영역에서 이혼한부모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한부모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이들 자녀교육 지원은 곧 한부모 가족의 입과 워먼트와 안정성의 가장 큰 위협요소를 제거되는 지름길인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철희 외(2000), “이혼을 하려는 모의 자녀양육 선택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
- 김만웅(2004), 「우리나라 이혼절차에서의 조정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박민정 외(2000), 「저소득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장혜경 외(2005),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용(1996), “이혼 후의 양육자 및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민법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 『사회법행정』 제428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2-23.
- _____(1998), “이혼 후의 공동친권”, 『관례월보』 제332호, 관례월보사, 27-45.
- 김성희(2003), “청년 남녀의 이혼에 대한 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75-85.
- 김수정(2003), “이혼협상의 실태와 주요 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2), 69-89.
- 김수정·권신영(2001), “이혼과정에 있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8, 41-75.
- 김현정(2001), “이혼시 자녀양육비 판정의 문제점과 합리적 지침방향제시”, 『소비자학연구』 13(3).
- 김혜영(2003), “한국의 가족주의와 여성인권”, 『아시아 여성연구』 42집 :9-46.
- 김혜영·이은주·윤홍식(2005), “여성빈곤의 구조적 요인과 빈곤의 여성화” 『아시아여성연구』 44집 1호: 5-51.
- 변화순(1996a), “부모의 이혼에 따른 아동의 권리”, 『정신건강연구』 15,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28-45.
- _____(1996b), 「이혼가족을 위한 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변화순·김혜영·윤홍식(2006), 「이혼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원변화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엄예선(2002), “이혼 가정에 대한 개입방안 1,2” 한국가족사회복지학과 제 11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 오은순(1997), “이혼가정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희정(2004), “이혼 후 비양육부모의 자녀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고찰: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연구』 1(1), 325-251.
- 윤덕경·장영아(2002), 「가족법상 친권·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삼연(2002), “이혼가정 청소년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 37-65.
- 이재경(2000), “성별화된 이혼과 여성”, 『가족과 문화』 1 2(2), 81-98.
- 이현송(1997), “이혼의 인구·사회경제적 결정요인”, 『가족과 문화』 2, 69-90.
- _____(1999), “주관적 이혼 사유의 변화”, 『가족과 문화』 11(2), 25-45.
- 장혜경·김혜영·김영란·송다영(2005), 「모자가족 지원 정책 및 서비스 연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장혜경·민가영(2002), 「이혼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 양육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조성연(2004),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계”, 『한국가족관리학회지』 22(1), 153-167.
- 주소희·조성우(2004), “이혼가정자녀의 행동적응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요인과 아동의 이혼지각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4), 215-238.
- 최달곤(1996), “이혼 후의 자녀보호”, 『가족법연구』 10, 한국가족법학회, 175-202.
- 한경혜·강유진·한민아(2003), “이혼태도와 관련 요인”, 『가족과 문화』 15(1), 77-96.
- 한경혜·김영희(1994), “이혼여성의 전배우자와의 관계 및 협력적 부모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가족학회』 제 6집.

■ 국외문헌

- Amato, P.R.(2000),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dult and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269-1287.
- Amato, P.R., & Keith, B.(1991a), “Parental divorce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10, 26-46.
- Barros, Nancy(1995), *Parenting through Divorce*, Motive Publishing Company Inc.
- Baum, N.(2003), “Divorce process variables and the co-parental relationship and parental

- role fulfillment of divorced parents”, *Family Process* 42, 117-131.
- Boyan, Susan Blyth(1997), *Cooperative Parenting and Divorce*, Active Parents Publishings Inc.
- Criss, M.M, Pettit, G.S., Gates, J.E., Dodge, K.A., & Lapp, A.(2002), “Family adversit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73(4), 1220-1237.
- Emery, R.E.(1998), *Marriage,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Newbury Park, CA: Sage.
- Hetherington, E. M. & Stanley-Hagan, M.(1999),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divorced parent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Vol. 40(1), 129-140.
- Hetherington, E.M., Cox, M. & Cox, R.(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pp233-288). NY: Erlbaum.
- Hetherington, E.M.(1999), “Should we stay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children? in E.M. Hetherington.(ed.), *Coping with Divorce, Single-parenting, and Remarriage: A risk and resiliency perspectiv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Kaslow, Folerance W.(1997), “Effects of divorce on the children”, *Painful Parentings*, John Wiley & Sons, Inc.
- Kelly, J.(1998), “Long-term adjustment in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119-140.
- Kelly, J.(1993), “Current research on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Family and Conciliation Courts Review* 31, 29-49.
- Maccoby, E.E. & Buchanan, C.M., Mnookin, R.H. & Dombusch, S.M.(1993), “Post-divorce roles of mothers and fathers in the lives of the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1-15.
- Mclanahan, S. & Sandefur, G.(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Nicholas, Long and Rex Forehand(2002), *Making Divorce Easier on Your Child*, Contemporary Books.
- Teachman, Jay D. & Karen Polonko(1990), “Negotiating divorce outcomes: Can we identify

patterns in divorce settl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2, 129-139.

Thayer. Zabeth S(2001), *The Co-Parenting Survival Guide*, New Harbingers Publications.

Weitzman, L. J.(1985), *The Divorce Revolution*, The Free Press.

Wellerstein, J.S & Kelly, J.B.(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Y: Basic Book.

변호사의 이야기, 변호사가 바라본 자녀의 이야기

김재련 변호사 / 법무법인 베스트

이혼가정 자녀보호와 관련하여 ●

1. 들어가며

이혼가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과거에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여 과감하게 이혼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나하나 참으면 온 가족이 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내가 불행하면 내 가족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이다.

희생이 미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폭행과 학대의 공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에 있어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의사가 무시되고, 부모의 일방적인 이혼결정에 의해 자녀들은 부모 중 어느 한 쪽과는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혼가정의 자녀 문제를 심각하게 한 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혼과정에 있어서 자녀가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어야 하고, 그러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혼가정의 자녀보호

가. 자녀들의 보호받아야 할 권리내용

(1) 보호·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 결과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2)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3) 부양의 정도 및 방법(민법 제977조)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녀들은 부모의 경제적 형편에 상응하는 정도의 부양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나. 이혼가정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며, 상대방은 양육권을 부여받은 예전 배우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외국은 부부 이혼시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에 있어서 양육비지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은 허용하지 않는 입법례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간에 이혼과정에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과 달리 양육비 지급의무와 관련해서는 현실성 없는 적은 액수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고,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지 않는 정도의 양육비지급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뿐 아니라 양육비지급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치가 없고 다만 법원에 다시금 이행명령신청을 하고 그러한 이행명령신청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많다.

양육비지급의무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지 않은 바, 매월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은 양육권자에게 지나친 부담과 번거로움으로 작용하고 그 과정에 이전 배우자에 대한 악감정이 깊어져 결국 자녀에 대해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표출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에서는 2004년경 개인이 양육비지급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양육비지급의무자를 상대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고, 가족법 개정안에서도 '부양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심판청구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여 양육비이행확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법원은 부양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게을리하고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장래의 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부양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양의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부양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된 담보물로부터 양육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직 발효된 상태는 아니나 그와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미지급문제로 인한 경제적 갈등은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부모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이 갈등을 겪는 원인

보통 이혼가정의 자녀들을 비행청소년으로 폄하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 비행청소년 중에서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혼가정의 자녀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느 한 순간에 부모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고, 부모의 이혼이 자녀와는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문제에 대해 예민할 수 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큰 피해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 중에서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의사를 진지하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않고, 부모가 이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여 자녀의 이해를 유도하는 경우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과정에 자녀들은 자신들이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지 않았다는 비난을 품게 되고, 이혼 후 어느 한 부모와 살면서 일탈행동 등으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일탈행동을 지속하는 자녀들의 경우 부모의 질책에 대하여 반항적으로 '무슨 상관이나, 나 같은 것이 안중에나 있는 것이냐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행동의 근저에는 부모의 이혼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지 못한 채 무시되었다는 반항심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혼과정에 자녀들이 무시되었다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는 부모의 이혼과정에 자녀들이 스스로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라. 이혼과정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1) 자녀의 의사표현 기회 제공

현재 가정법원은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부부 사이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치열한 양육권다툼이 있을 경우 양육적격자를 판단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이 현장에 임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여건 등에 관한 실질조사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혼과정에 미성년자녀들이 있을 경우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취학연령이상의 아동이라면 가사조사관이 반드시 자녀와의 면담을 통해 '부모의 이혼에 대한 자녀의 의사,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자녀들은 이혼과정에 있어서 물건 혹은 객체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혼에 있어서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고, 부모의 이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함으로써 이혼과정에서의 일탈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

(2) 자녀의 법정증언 제한

이혼가정의 경우 부부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입증하려고 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사람들 중 증언을 해 줄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느 한 쪽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잃어버리게 될 뿐 아니라 법정증언을 함으로 인하여 상대방 부모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자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증언을 듣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대의 잘잘못을 밝히기 위해 부득이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 쌍방이 없는 상태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자녀들을 법정 이외의 장소로 불러 부모의 결혼생활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사유에 관한 자녀의 입장을 청취한 후 판결을 함에 있어서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이혼소송 과정에 자녀들이 개입된 사례검토

가. 황혼이혼 사례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신체적 학대를 받다가 결국 황혼이혼을 결심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 아들은 상속문제로 아버지편을, 딸들은 고생한 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하여 어머니편을 드는 사례가 있었다.

위 사례의 경우 딸들이 재판과정에 그동안 어머니가 입은 피해에 대한 증언을 하면서 오열을 하기도 했는데, 그 후 조정과정에 재판장님께서 할머니와 딸들에게 ‘할아버지가 젊어서부터 할머니를 고생시킨 것이면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지 왜 할아버지가 열심히 돈벌어 놓은 후 늙고 병들고 나서야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냐, 딸들이 부추겨서 그런 것 아니냐며 호통을 친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의 경우 딸들은 오로지 더 이상 고생하면서 살다가는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어머니의 신변이 걱정되어 소송을 돕게 된 것인데 할아버지와 아들이 재산 절반을 할머니가 분할받게 되면 딸들이 결국 그 재산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딸들이 재산욕심 때문에 할머니의 이혼을 부추긴다고 억지주장을 하였는데 판사가

그러한 할아버지측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당혹스러운 사례였다.

위 소송과정에 결국 할머니 뿐 아니라 딸들 또한 이중삼중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 여교사가 딸을 혼동스럽게 한 사안

여교사가 음란채팅, 상습적인 성형수술, 외도로 인하여 남편과 협의이혼하였고 어린 딸은 남편이 양육하고 있던 중 여교사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변경신청을 한 소송사례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여성이 양육자변경요구를 하면서 면접교섭과정에 지속적으로 어린 딸에게 ‘친할머니가 좋냐, 외할머니가 좋냐, 친할머니가 예쁜 옷도 사주지 않고 자꾸 때리지 않냐, 때리면 바로 엄마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유도성 질문을 하였고, 딸과의 대화내용을 계속 녹취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일방이 자녀들 단독으로 양육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상대배우자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 태도라할 것이다.

본 사례의 경우 남편 및 시어머니는 최선을 다해 어린 손녀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실제 딸을 키우지 않는 친어머니가 손녀딸과 친할머니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그 과정에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 손녀딸은 할머니가 잔소리라도 하면 바로 ‘엄마한테 이르겠다, 엄마하고 살겠다’고 말하여 할머니를 당혹스럽게 한 사례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일시적으로는 할머니가 당혹스럽겠지만 어린 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 할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하게 되고, 친어머니의 무책임한 말로 인하여 결국 정신적 혼동을 겪게 될 수 밖에 없다.

자녀의 양육권결정에 있어서 자존심 혹은 경쟁심 때문에 실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양육권주장을 하는 것 보다는 진심으로 자녀를 보호, 양육할 책임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양육권 주장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게 된 부모의 경우 실제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양육권행사에 전적인 협조를 해 주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자녀교육·성장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취학자녀들의 경우 학교에서 담임교사의 주재하에 부모 쌍방이 만나 자녀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임).

4. 맺음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하루 아침에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잃게 되고, 이혼가정 자녀라는 수식어와 함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혼이 부모에게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그러한 선택에 대해 자녀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하며, 진지한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불편함을 겪에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불행해 지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만 한다고 본다.

부모가 이혼하는 과정에 자녀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이혼과정에 자신이 소외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국가로부터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부모가 이혼했기 때문에 일탈행위를 해도 된다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

※[별첨1] 이혼자녀들의 고통?! 난 이렇게 생각해!

이혼자녀 통념에 대한 ‘이혼자녀’의 생각

성인이 되기 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를 대상으로, 이혼자녀를 둘러싼 사회적 통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면접인터뷰 및 서면질의를 통해 답을 구했고, 가감없이 정리하였다.

- 자녀1: 19세에 부모 이혼, 현재 31세, 직장인
- 자녀2: 기억하지 못하는 나이에 부모님 이혼, 현재 30세, 직장인
- 자녀3: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 이혼, 현재 29세, 직장인
- 자녀4: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 이혼, 현재 29세, 직장인

다음의 <box> 안에 있는 글은 < 이혼자녀들의 고통 >이라는 제목으로 이혼 가정의 자녀에 대해 쉽게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는 글의 일부입니다. 이런 담론에 대해서 자녀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예를 들어, “맞는 말이다, 불쾌하다, 혹은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등등.)

출처: <http://ihonclinic.com/watch/pain.htm> 를 비롯하여 여러곳.

통념1. 이혼자녀들은 자아정체성에 분열증세를 느낍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자녀들은 영혼이 찢어지는 분열증세를 느끼며, 자신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자기혐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인생의 불완전성과 허무로 인하여 평생 우울하고 슬픈 인생관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자녀1: 글썩요. 1. 2번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느끼지를 못했죠.

자녀2: ‘영혼이 찢어지는 분열증세를 느낀다.’ 아 정말 ^^; 이혼 자녀의 나이 마

다 좀 다를 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렸을 때, 자기가 보기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완벽했다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그런다면. 엄마 아빠가 아이 앞에서 그렇게 연출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녀가 모르게 사이 좋은 척 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그런 경우라면 자녀가 굉장한 혼란을 느끼고 분노를 느낄 수 있을 거 같은데. 보통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부모의 이상기류를 자녀가 왜 모르겠어요. 아무리 어렵도. 그거는 부모의 착각이죠. 그걸 계속 오래 본 애일수록. 그 과정에서 겪는 상처가 훨씬 크죠. 이혼 이후에 이런 걸(혼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에 그러면 자녀가 엄마한테 굉장한 애착을 느낀다거나 엄마를 독점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빠한테 그런다거나. 그런 애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분열증세라는건 부모와 함께 살아도 자녀가 가장 흔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고,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보다 엄마에게 훨씬 집착하는 애들 많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예죠. 이혼 때문에 자녀가 심한 불안증세를 느낀다, 이혼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해요.

자녀3 : 일부 동의하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혼의 근본적인 원인이 나빠진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좋지 않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며 두 어른의 감정이 자녀에게 전이되기 때문이다.

관계가 지속되다 보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을 아이는 이해하기 어렵고, 좋았을 때 자녀가 태어났는데, 차후 관계가 나빠진 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나는 왜 낳았을까?’ 라든가 ‘책임을 져야지, 왜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나?’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후 부모에 대한 이해의 과정을 겪게 되면 자아정체성에 분열증세를 보일 정도로 심각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녀 역시 성장하여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거나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린 시절만큼 부모에의 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만의 세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4: 이혼이 자녀에게 힘든 과정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혼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평생 우울하고 슬픈 인생관을 지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소외하는 것이 문제다. 이혼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왜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충분히 공감할만한 혹은 공감하지 못하더라도 배경/과정/결과/미래계획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통념들 때문에 오히려 이혼을 선택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가 상처받을까봐’, ‘자녀가 고통받을까봐’ 하는 생각을 가지며, 숨기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도 그러했으며, 어느날 갑자기 ‘넌 아싸하고 살아야해’라고 말한다든지 ‘엄마와는 다신 볼 수 없어’ 등의 강압적인 말들이 오히려 이혼을 대하는 자녀로서 힘든 부분이었다.

통념 2. 이혼자녀들은 사람에 대하여 불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불신감으로 자리잡고,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불신감으로까지 번져, 성장한 후에도 결혼에 자신이 없거나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 배우자선택에 부정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으로 인한 이혼 시 자녀마저 성적문란으로 반응하거나 아니면 극단적 혐오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1: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머니께 아버지 뭉까지 사랑을 받고 자라서 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자랐죠.

자녀2: (제가) 남성에 대한 불신감이 조금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이혼,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주위에서 괜찮은 남자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인 남자를 봤을 때라든가 친구의 아버지를 봐도 그렇고 좋은 아버지, 부러워할만한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딱 한 친구 아버지가 정말 괜찮았었고 그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면 맞는 부분은, 부모의 ‘헤어짐’을 겪고 난 후 일정정도 인간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인간들은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인간에 대한 불신감을 얻는 거잖아요? 모든 관계에서 만족을 하기는 불가능하니까.. 각자 인간에 대한 불신감을 얻게 되는 경로는 다른 거고, 그걸 해소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몫인 거 같아요. 뭐 부모의 이혼 때문에 인간에 대

한 불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가정이나 배우자에게 부정적이 되는 거다, 이렇다기 보다는. 그니까 부모의 이혼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에 대한) 그 불신감을 잘 극복하지 못한 결과인 거죠.

자녀3: 역시 일부 동의한다. 보고 자란 것을 그대로 배우거나 답습하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다만, 본인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명절 때 작은 아버지가 사촌동생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나는 니네 엄마가 최고야, 니네 다 소용없어.”라고 말했는데 그 때 사촌동생은 작은 엄마와 작은 아버지에게 “아직도 엄마는 아빠가 좋냐”, “아직도 엄마가 좋냐”고 물어봤는데 두 분 다 그렇다고 대답했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 두 분도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 대화를 들은 이후에 오랜 시간 함께 산다고 해서 누구나 다 헤어지거나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다.

그 사건 이후로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건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가정 꾸리기에 자신 없는 나로 남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인식의 전환 기회가 생기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보고 배우고 경험한 바를 기초로 그 사람의 인생을 꾸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는 편이다. 가정 분위기를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통념에 대해서도 거의 동의하는 편이다.

다만, 그 기준이 이혼이나 아니냐 자체라기보다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면에서 결핍을 얼마나 느꼈느냐에 대한 정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지, 이혼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녀4: 사실 성장하는 기간동안 결혼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신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취학기간동안에 가장 되고 싶은 것이 선생님인 것처럼(내가 어렸을 때는 그랬다) 내 경험이 이혼한 부모를 통해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되짚어보면 이혼을 대하는 주변의 반응 때문에 상처 입었던 것들, 그래서 결혼과 사랑 등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많았던 듯 하다. 학교다닐때 선생님들이 ‘너희 엄마 이혼

하셨구나’ 라는 말을 교무실에서 하거나, 친척들이 볼 때마다 ‘저런 불쌍한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거나 하는 등은 주변시선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이혼한 부모의 생각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도 부모로부터 느끼기도 했다. ‘안됐다’, ‘애엄마 때문에 애만 불쌍하다’ 등의 말들은 내가 당연히 불쌍한 아이이고, 절망적이어야 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경험상 - 우리 엄마는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하셨는데 - 두 번째 이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나는 엄마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엄마와 나는 가끔씩 이야기할 때 ‘이혼해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서로 말한다. 이혼을 선택했다고 부모를 모두 원망하거나 하진 않는다. 이는 너무 자녀를 ‘나이 어리고 판단력 없는 아이’라고만 치부하는 행위이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이들도 판단할 수 있다.

행복한 가정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와서 평온해진 집안과 자라면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의 행복한 가정을 보게 되면서, ‘가정에서 저렇게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구나’ 혹은 ‘이렇게 행복하고 오순도순한 가정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게다가 지금 현재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우리 가정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걱정이 없다.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부정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배우자는 선택을 안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통념 3. 이혼자녀들은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을 갖게 됩니다.

이혼자녀들은 이혼하고 떠나간 부모가 자기를 내버렸다는 거절감과 상실감으로 인하여 수치심, 패배의식, 열등감, 고독, 자포자기, 일그러진 자아형성 등 인격적으로 큰 상처와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커서 결혼한 다음 의처증, 의부증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녀1: 전~~~혀 없었어요.

자녀2: 앞에 거랑 비슷한데,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절감과 상실감은 부모와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서도 일정 정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본인에게 전혀 신경쓰지 않는 부모라면 살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버림받고 전혀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누구와 사느냐가 아

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자녀의 심리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녀3: 버림받았다는 거절감에는 적극 동의한다.

사람을 못 믿거나,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지나치게 상대방에 집착하거나, 버림받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잘 해주는 행동, 혹은 일부러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두는 행동 등에 대한 경험은 본인도 충분히 했고, 이혼자녀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그러한 경험을 보거나 했을 때 그런 경향을 띠는 것은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

허나 이 역시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극복은 가능하다고 믿는다.

자녀4: 초등학교 1학년때 갑자기 여관방에서 아빠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엄마를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안가질래야 안가질수가 없다. 거절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이러한 충격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혼했다’는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이혼 전과 이혼 후와 모든 과정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이혼 후 자녀들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지속하지 않도록 하려는 부모와 사회의 배려가 필요하다. 사실 이제까지 ‘부모’의 책임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왔지만, 거절감을 갖게 하는 것은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주변사람들의 굵지 않은 시선이나, 통념, 등본상 나타나는 ‘동거인’으로서의 정체성(법적으로 나는 아직도 엄마와 가족이 아니다, 한집에 사는 동거인일 뿐이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20년 이상 한번도 본적이 없고 내가 자라오면서 양육비도 전혀 준적이 없으면서 법적으로 떳떳하게 아버지이다) 이런 거절감을 갖게하는 요인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거절감을 ‘지속적으로’ 갖게하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다. 이런 걸 보면 이혼자녀들이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만을 사회가 기대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통념 4. 이혼자녀들은 분노와 혼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혼자녀들은 부모에게 분노와 증오를 느끼며, 심정적으로는 부모중 약자의 편을 들고, 이혼을 야기한 부모에게 거리감을 두고 반항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정을 갈구하는 애증의 혼란의 틈바구니에서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고통스러운 혼란감을 잊고자 의도적인 비행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녀1: 이혼 6번 이혼자녀들은 장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고 비웃는데. 장래와 연결해서요. 그때는 그랬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힘들었어요. 돈이 문제였죠. 그리고 그런 생각은 했어요. 학교 다닐 때. '왜 나를 낳았을까.' 학교 다닐 때 화목해 보이는 가정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자라는 애들 보면서 참 좋겠다, 나라면 내가 저 집 아들이라면 더 좋은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정말 저놈들 배부르다. 그런 생각은 했죠.

자녀2: 이혼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잘.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했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오해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분노, 증오를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혼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혼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자녀에게 부모의 심정 같은 것, 이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 이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자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이혼)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충분히 숙지하고 생각했다는 것을 자녀에게 설명하고 알릴 필요가 있죠. 자녀가 매우 어리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설명할 수도 있고, 이혼 결정이 아이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나를 빼고’, 부모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 그 과정을 지혜롭게 거쳐 가고자 한다-는 걸 전달해 준다면 불안감, 이런건 기우가 아닌가..

자녀3: 이 또한 일부 동의한다.

자녀가 부모를 불완전한 인간으로 보기보다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뒷바라지해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처럼 엄마가 다양성에 대한 교육을 자연스럽게 한 경우, 부모가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여유를 가진 자녀라면 분노와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정적으로 부모 중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은, 인간으로서 옳고 그름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런 짓을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혼 자녀 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인 것 같다. 그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녀4: 부모의 정을 갈구하는 것은 이혼자녀들만이 아니다. 보통 아이들도 부모의 정을 갈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를 특정화하여 정을 받지 못하는 이혼 자녀들만이 혼란스러운 경험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최근 조기교육열 풍으로 어린아이들이 미주 등으로 친척집에 혼자 어학연수 등을 간다든지 하는 일이 많고, 이에 따라 아이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거나 힘든 경험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혼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그룹의 아이들이나 자신들이 가진 환경과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을 겪을 수는 있으며, 청소년기에 혼란스러움을 겪는 것은 사춘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다. 굳이 왜 ‘이혼자녀들’만 특별히 그렇다고 생각할 수 없다.

통념 5. 이혼자녀들은 근심과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혼자녀들은 자기가 좀 더 잘했더라면 부모들이 헤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잘못된 책임의식과, 자기가 좀 더 착하고 말을 잘 들었더라면 부모가 떠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죄책감으로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거나 숙성한 아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1: 죄책감? 안했죠. 안들었죠. (그럼 이혼을 못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 아뇨 그것보다는.. 그런 생각은 했죠. "빨리 컸으면." 빨리 커서 엄마가 안맞게 했으면 좋겠다. 는 생각.

자녀2: 앞에 거랑 의견이 비슷한데요, 이혼자녀들이 근심과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건 이혼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혼 직전까지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죠. 부모의 이혼을 본인 탓으로 여기는 것은 부모가 그 동안 보여준 행동 때문

에 자녀가 그렇게 추측한 거잖아요. 그게 (자녀가 부모의) 이혼 그 순간에 느끼게 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부모가 매우 권위적이고 폭력적이면서, 자주 자녀를 이유로 싸움을 했다면 자녀가 그렇게 느끼게 되는거,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걸 보여주는 게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한테 부모가 근심과 죄책감을 주는거라고 생각해요.

자녀3: "빠지기도 합니다"라고 한다면 적극 동의.

나 역시 처음에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몇 번의 시행 착오 끝에 둘의 헤어짐은 둘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근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녀4: 잘못된 책임의식은 없다.

통념 6. 이혼자녀들은 장애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혼자녀들은 부모를 둘 다 잃어버리거나 앓을까, 살던 집과 다니던 학교를 떠나게 되거나 앓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 가난에 대한 스트레스 등 자신의 장애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1: 이걸 말씀드렸듯이, 돈이 문제였어요. 그때는 그랬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힘들었어요.

자녀2: 부모가 이혼하면 자녀가 본인의 장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겠죠. 아무래도 상황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걸 추후 충분히 극복가능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장애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부모와 함께 살아도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런 집 자녀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이것도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환경, 관계, 소통의 문제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질문을 듣고 살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런 애길 한 건 아닌데 엄

마 아빠가 죽을 듯이 싸우니까, 큰언니가 와서, “너 엄마랑 살거야 아빠랑 살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엄마랑 아빠랑 언제 헤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에 살았고 근데 결국 이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같은 경우는 불안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불안 증세에 대해서 되게 잘 알죠. 자기 어렸을 때 가정환경 때문에 그랬다는 걸. .

자녀3: 장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혼자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가정의 자녀, 장애인 가정의 자녀, 너무 부자인 가정의 자녀도 갖는 불안감이다.

그건 성장통이지, 이혼 자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녀4: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맞다. 이는 그리고 당연하다고 본다. 나를 돌봐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없어질까봐 불안해했다.

자녀3: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일시적일 수 있는 현상이다.

이 역시 이혼 자녀라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싫은 상황, 정서적 노동이 필요한 상황에도 그럴 수 있는 문제다.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싫은 상황에 이혼이 속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마치 이혼자녀만 그런 것처럼 표기하는 것에는 사회적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녀4: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게 싫어서 차라리 이혼을 했으면 했다. 재혼시 계부모가 싫었던 이유는 계속 바람피우고, 경제력없으면서 가정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계부모를 싫어하는 것은 ‘계부모’이기 때문이 아닌 당연한 이유가 있다. 아이들이 철없이 괜히 계부나 계모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통념 7. 이혼자녀들은 세상만사가 모두 싫어집니다.

이혼자녀들은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부모들도 싫고,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도 싫고, 공부도 싫고 학교가기도 싫어집니다. 부모가 재혼시 계부모도 싫고, 마음 붙일 데가 어디에도 없는 등 세상만사가 모두 싫어져 방황하고 비뚤어지기 쉽습니다.

자녀1: (웃음^^)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그러네요. 동의하고 싶었으나 전혀 동의가 안되는^^

자녀2: 이혼자녀들이 세상만사가 모두 싫어져 방황하고 비뚤어지기 쉽다면, 이 세상에서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일컫는 모든 청소년들이 다 이혼자녀인가요?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그 이유라고 한다면 되게 복잡한 거라고 생각해요. 원인이 한 두 개겠냐구요. 이것은 부모부터, 교육, 뭐.. 학교, 사회 등등 거대한 그런, 유기적인 시스템이랄까, 그런 거에 근거해서 분석되고 고민할 문제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부모의 이혼만 가지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좀 웃기네요.(^^)

※[별첨2] 2003 정상규 판사의 자녀양육 권고문

정상규 판사의 자녀양육 권고문 中
<당신은 다음과 같이 아이를 도울 수 있다>

- 자녀에게 솔직하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얘기하세요. 아주 어린 자녀에게도 그들의 이해 능력에 따라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들에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얘기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또는 악의적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다른 일방의 부모를 비난하지 마세요.
- 자녀에게 "너 엄마하고 살꺼야,아빠하고 살꺼야"라고 판단을 강요하지 마세요.
- 자녀가 다른 일방의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 양육, 방문 일정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해 두십시오.
- 이혼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가 최소화되도록 하십시오.
- 자녀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 자녀들이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허황된 희망을 갖게 만들지 마십시오.
- 어른들간의 다툼에서 자녀들이 멀찍히 떨어져 있도록 하십시오.
- 자녀들에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십시오.
-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다시 확실히 해 두십시오.

이혼자녀들을 위한 어느 가정법원 판사의 현실적인 조언 14가지

메모란 ●

서울가정법원 정상규 판사가 이혼 사건 당사자들에게 이혼 후 자녀들을 대하는 요령 등을 담은 '자녀양육 권고문'을 나눠주고 있어 화제다. 수년간 이혼재판을 담당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혼을 무조건 막기 보다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도록 주위에서 도와주는 것이 현실적인 원조방법이라는 사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를 망치는 이혼이 되기도 하고 아이를 살리는 이혼이 되기도 한다. 남남으로 갈라서더라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자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꾸준히 상의하는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상규 판사.

“부모가 헤어질 때 자녀들은 고통, 불안, 방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고통스런 감정들은 당연한 겁니다. 더러는 그런 정신적인 혼란이나 분노, 우울증으로 행동장애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죠. 사실 이혼으로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아이들입니다. 이혼하는 부모들에게 권고문을 배포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더군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로 아이들과 문제를 풀어간다면 빨리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후략)

출처: 2003 중앙일보 팻지닷컴,

<http://patzzi.joins.com/kids/200310/30/200310301409135001290000290100290103.html>

발행일 : 2007년 11월 16일

발행처 : (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2-9 4층

전화 : 02-2269-2962

전송 : 02-2269-1823

홈페이지 : <http://www.hotline.or.kr>

이메일 : webmaster@hotline.or.kr